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인쇄/1999년 12월 20일

발행/1999년 12월 20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곽태환

편집인/북한인권센터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8 팩시밀리 901-2546

© 통일연구원, 199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76-1

5,000원

학술회의 종서 99-05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제32회 국내학술회의('99.11.30) 발표논문집

통일연구원

○본 자료는 1999년 11월 30일 서울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개최된 통일연구원 제32차 국내학술회의의 회의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통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 차례 -

개 회 사

곽태환(통일연구원 원장)

대주제: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1.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보호 및 실효적 지원방안 1
김명기(명지대학교)
 2.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심리적 갈등구조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 40
전우택(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 토 론 65
- 회의일정 94

개 회 사

오늘 학술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해주실 김명기 교수님! 그리고 전우택 교수님! 학술회의의 진행을 맡아줄 저희 연구원의 제성호 북한인권센터 소장님!

토론에 참석하여 주신 토론자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는 등 외부여건이 악화되고 북한의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식량과 생활필수품의 배급이 어려워지자 생존을 위해 중국 등 외국으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의 수가 급증하여 왔습니다. 탈북자들은 발각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어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국내에서도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법적·정치적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의 체류국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우다웨이 주한중국대사가 “탈북자문제는 어디까지나 중국과 북한의 문제로 제3자가 주권적인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중국에서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왔지만, 중국정부의 태도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신중한 자세에 대해 국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하여 지난 10월 16일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제3국에 체류중인 탈북자 중 한국행을 희망하는 사람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등과의 협조를 통해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천명하는 등 최근 정부도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월 18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해외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이 국제적 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북한 탈북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1994년 이후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문제가 관심사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금년 7월 8일 탈북 귀순자들의 국내정착과 사회적응을 지원하

기 위한 시설인 「하나원」을 경기도 안성에 개원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시작에 불과할 뿐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탈북자들의 국내적응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통일연구원(KINU)은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법적 보호와 국내에 입국한 탈북주민들의 남한사회적응문제에 대한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대화의 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지정토론자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뜻깊은 학술회의를 개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은 임동원 통일부 장관님과 두상달 칠성산업 사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금번 학술회의가 생산적이고 성과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99. 11. 30
통일연구원 원장
곽 태 환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보호 및 실효적 지원방안

김 명 기
(명지대학교 교수)

I. 序 論

분단 50여년을 보낸 오늘 한반도에 살고 있는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한민족에게 요구되는 민족적 당위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일임은 채언을 요치 않는 바다.

비록 분단이 외세에 의해 강요된 것이지만 통일 또한 외세에 의해 주어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양단의 비극을 자주 의지로 극복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할 당면과제를 민족적 소명으로 자각하여 주변열강에 대해 슬기로운 창조와 진취적인 투지로 우리의 외교역량을 다하여 국제적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족적·자주적 통일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분단 조국의 통일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i) 한민족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유지하고, (ii) 이산가족과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

고, (iii) 남북 대결에 의한 국력의 낭비를 배제하여 경제적 성장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iv)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여 우리 민족과 국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의 당위성을 이루는 요소의 하나는 “북한주민의 인권보장”에 있다. 즉, 통일을 실현해야 할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장”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현상을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i) 북한주민은 우리와 같은 한 민족일 뿐만 아니라, (ii)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전문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의 고유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에 있어서의 자유·정의·평화의 기본(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s and peace in the world)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에 있어서 최근 수년간의 경제사정의 악화, 특히 식량난의 악화는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극심화하고 이러한 극심화의 위협으로부터 체제유지를 위한 인권침해는 더욱 극대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의 여러 국제기구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특히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의 추진 구도 속에서 단계적으로 북한인권문제에 참여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는 크게 (i)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ii) 북한당국의 탄압과 식량난을 피하기 위해 중국·러시아 등 해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 (iii)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앞의 (ii)에 관해서만 주로 국제법의 관점에서 논급하기로 한다. 이하 “해외체류”를 “재외”로 표기하기로 한다.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i) 국제법적 접근이며, (ii) 학자의 논문·저서 등 문헌에 의한 이론적 연구와 실무자의 공식문서·참고자료 등 직무자료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종합하는 방법이며, (iii) 법실증주의에 입각한, 법해석론의 방법에 기초한 것이다. 이하 재외북한이탈주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자에 관해 고찰해보고,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실효적 지원방안을 제도적·절차적 방안과 실천적·실체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논급하기로 한다.

II. 在外 北韓離脫住民에 대한 法的 保護義務

최근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제국과 중국에는 수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불안과 곤궁속에서 은신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재외북한이탈주민은 외교상의 이유로 우리나라의 재외 공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에 통일원에 인도지원국을 신설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당국의 노력이 재외북한이탈동포에 대한 인도적 보호에는 미흡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외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민인권단체의 노력도 적극적·진취적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으나 이들 시민인권단체는 비정부조직이므로 이들이 재외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인권을 보호해 주기에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재외북한이탈주민의 법적 보호(특히 인권보호)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이 연구는 법적 측면에서 재외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의무가 누구에게 부과되어 있는 것인가를 규명하여 그 의무자에

게 부과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해 보려는 것이다.

이하 재외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제법상 보호의무자와 국내법상 보호의무자를 구분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國際法上 保護義務

가. 外交的 保護權에 대한 義務

(1) 外交的 保護權의 意義

국가는 외국에 재류하는 자국민이 재류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는 불법하게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을 경우에 재류국에게 적당할 구제방법을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를 외교적 보호권(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 또는 재외국민보호권이라 한다.¹⁾

외교적 보호권은 자국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를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²⁾ 그리고 자국민이라 할 지라도 교전단체의 주민에 대해서는 교전단체가 타국가와의 관계에서 외교적·정치적 관계를 갖는 것이므로 교전단체가 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그의 본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³⁾ 그리고 교전단체의 주민의 국제법상 위법행위

1) Wilhelm K. Geck, "Diplomatic Protection", in Rudolf Bernhardt(ed.), *Encyclopa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10(Amsterdam: North-Holland, 1989), p. 105.

2) *Ibid.*, p. 100.

3)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3rd ed.(Oxford: Clarendon, 1979), p. 481; Geck, *op. cit.*, *supra* n. 1, p. 103; I. C. J., *Reports*,

에 대해서도 교전단체가 국제법상 책임을 지는 것이며 그의 본국이 국제법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⁴⁾

그러나 난민은 그의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므로 이는 사실상 무국적자(*de facto stateless persons*)로서 그가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국가의⁵⁾ 외교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상 비피보호자(*de facto unprotected persons*)인 것이다.⁶⁾

요컨대, 난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그가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의 국적국에 있는 것이 아니다.

(2) 在外北韓離脫住民에 대한 外交的 保護義

일반 국제법상 국가승인의 효력은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지위는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국제법상 국가이므로 그러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북한주민은 북한의 국민이며 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북한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교전단체에 불과하지만 교전단체의 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교전단체에 있으므로 북한주민에 대한 외교적

1949, pp. 207, 214.

4) Eibe H. Riedel, "Recognition of Belligerency", in Rudolf Bernhardt(ed.), *Encyclopa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4(Amsterdam : North-Holland, 1982), p. 168.

5) 여기 국가에는 교전단체가 포함된다.

6) A. T. Fragomen, "The Refugee : A Problem of Definition", *Case Western Reserv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 1970, p. 55; R. B. Lillich, *The Human Rights of Aliens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Manchester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4), p. 666; 김명기, 「국제법원론」, 상(서울:박영사, 1996), pp. 734-35.

보호권은 북한에 있는 것이며 남한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동서독의 경우 서독은 동독에 거주하거나 동독 여권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아니했으며 서독의 영토내와 외국의 서독대사관과 영사관에 있어서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했다.⁷⁾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에 북한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북한에 있는 것이지만 난민인 재외북한이탈주민은 사실상 무국적자로서 북한의 외교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난민의 지위를 부여 받은 재외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난민의 지위를 부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외국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도 역시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 있는 것이다.

요컨대, 재외 북한주민은 그 외국이 남한과 북한을 모두 국가로 승인한 국가(예컨대, 중국·러시아)인 경우에 그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북한의 국적을 가진 자이나 난민인 재외북한이탈주민은 난민의 지위를 부여 받은 후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 북한의 외교적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들은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의 국적을 가진 자이므로 남한만의 외교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외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의 의무는 남한에 있는 것이다.⁸⁾

7) Geck, *op. cit.*, *supra* n. 1, p. 105.

8) 남한만을 국가로 승인하고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예컨대 미국·일본)에 북한 주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주민은 국가인 남한의 국적만을 가진 자이나 외교적 보호권은 교전단체가 행사하므로(see *supra* n. 3) 교전단체인 북한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난민인 재미국 또는 재일본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외교적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see *supra* nn. 5-6) 그들은 그들의 국적국인 남한의 외교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 領土的 庇護權에 의한 義務

(1) 領土的 庇護權의 意義

“비호”(asylum)란 본국의 추적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의 영토나 외교공관·외국군대병영·외국군함·외국항공기 내에 들어온 난민에 망명을 허용하고 그의 본국에 인도를 거절하고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비호를 허용하는 주권국가의 권리를 “비호권”(right of asylum)이라 한다.⁹⁾ 비호권은 “영토적 비호권”(right of territorial asylum)과 “외교적 비호권”(right of diplomatic asylum)으로 구분된다.¹⁰⁾

영토적 비호권은 국제법상 인정되어 왔다.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¹¹⁾ 제14조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박해를 피해 비호를 타국에 요구하고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1951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Status of Refugees) 제31조 내지 제33조와 1967년의 “영토적 비호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erritorial Asylum)¹²⁾ 제1조는 영토적 비호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Asylum Case*(1950)에서 영토적 비호권을 인정하는 판결

9) Atle Grahl-Madsen, "Territorial Asylum", in Rudolf Bernhardt(ed.), *Encyclopaedia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8(Amsterdam:North-Holland, 1985), pp. 42-43; Arnold McNair, "Extradition and Exterritorial Asylum", *B. Y. I. L.*, Vol. 28, 1951, p. 172 ; Felice Morgenstern, "The Right of Asylum", *B. Y. I. L.*, Vol. 26, 1949, p. 327.

10) D. P. O'Connell, *International Law*, 2nd ed., Vol. 2(London : Stevens, 1970), p. 734.

11)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17(III)

1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312(XXII)

을13) 한 바 있다.

영토적 비호의 내용은 1951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2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 협약은 제7조에 최혜국대우조항(most favored nation clause)과 내국민대우조항(national treatment clause)을 두고 있다.

요컨대, 난민의 체재국은 그의 영토적 비호권에 근거하여 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2) 在外北韓離脫住民에 대한 領土的 庇護義務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토적 비호권은 그 북한이탈주민이 체재하고 있는 영토의 소속국에게 있다. 예컨대, 재러시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토적 비호권은 러시아에, 재중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토적 비호권은 중국에 각각 있다. 그리고 그 비호의 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이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요컨대,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기 이전에는 그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체재지 소속국인 외국은 재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야 할 “인권협약”상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난민의 지위를 부여한 이후에는 그 재외국북한이탈주민의 체재지 소속국인 외국은 재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야 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13) I. C. J., *Reports*, 1950, p. 281.

다. 準領事的 保護權에 의한 義務

(1) 準領事的 保護權의 意義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UNHCR)의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기능을 준영사적 기능(quasi-consular functions)이라 한다.¹⁴⁾ 1951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5조는 난민이 그의 국적국의 외교적·영사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로부터 제기되는 법적 곤란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당국(international authorities)에게 난민에 대한 준영사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한 국제당국이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인 것이다.¹⁵⁾

요컨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은 난민에 대한 준영사적 보호기능에 따라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2) 在外北韓離脫住民에 대한 準領事的 保護義務

재외 북한이탈주민은 그의 국적국인 북한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므로 북한의 외교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난민의 지위를 부여 받은 재외 북한이탈주민은 물론이고 난민의 지위를 부여 받기를 원하는 재외 북한

14) P. V. Krieken, "Reparation of Refugees under International Law", *Netherland Y. B. I. L.*, Vol. 13, 1982, p. 33 ; P. Weis, "Legal Aspects of the Convention of 28 July 1951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B. Y. I. L.*, Vol, 30, 1953, p. 483.

15) League of Red Cross Society, *The Refugees throughout the World*(Geneva: LRCS, 1953), p. 9; Krieken, *op. cit.*, *supra* n. 14, p. 24.

이탈주민은 북한의 외교적 보호를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는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의 준영사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요컨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은 난민의 지위에 있는 재외 북한이탈주민과 난민의 지위를 부여 받기를 원하는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그의 준영사적 기능에 따라 그들을 보호해야 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2. 國內法上 保護義務

가. 憲法의 規定에 의한 義務

“대한민국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야 할 국내 헌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¹⁶⁾

나. 法律의 規定에 의한 義務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대체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은 재외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호내용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동 법률은 주로 한국의 영토에 들어 오게 된 이후의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보호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

16) 김철수, 『신고 헌법학신론』 (서울: 박영사, 1988), p. 76.

다. 다만 동 법률 제7조 제1항은 재외 북한이탈주민은 재외 한국공관 장에게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제8조 제2항은 제7조 제1항의 보호신청에 대한 정부의 보호여부의 결정과 그 결정을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이상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재외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국적을 가진 남한의 국민이다.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제법상 보호의무는 제1차적으로는 외교적 보호권에 의한 보호의무로써 이는 그들의 국적국인 남한에 있는 것이며, 제2차적으로는 영토적 비호권에 의한 보호의무로써 이는 그들이 체재하는 영역의 영유국인 외국에 있는 것이며, 제3차적으로는 준영사적 기능에 의한 보호의무로써 이는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에게 각각 부과되어 있는 것이다.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내법상 보호의무는 “대한민국헌법”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특히 통일부장관에게 있는 것이다.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서 정부당국은 한편으로는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토적 비호권을 가진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 특히 러시아와 중국과 긴밀한 외교교섭을 통해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준영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남한에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를 설치하고 이와 특별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적 보호를 위해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이와는 별도의 특별법과 난민보호법을 제정하여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이들이 외국에 체재하여 남한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시민운동단체와 학술단체를 육성하여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한 실천운동과 이론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또한 정부의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을 지지하도록 하는 국민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입안·시행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형제이다”라는 국제인도법의 정신에 돌아갈 때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적 보호의 도의적 의무는 결국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더구나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는 인권존중의 차원을 넘어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숭고한 민족사적 의무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Ⅲ. 在外北韓離脫住民의 法的 保護와 支援方案

1. 制度的·節次的 方案

가. 政府次元의 方案

(1) 國際聯合

(가) 總會

국제연합 총회(General Assembly)는 “국제연합헌장”상 국제연합의

주요기관(principal organs)의 하나이며(제7조, 제1항). 최고감독기관(suprem supervisory body)이다.¹⁷⁾ “국제연합헌장” 제10조는 총회의 일반적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총회는 이 헌장의 범위내에 있는 문제와 사항 또는 이 헌장에 규정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문제와 사항을 토의하고 아울러 제12조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와 같이 문제 또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가맹국 혹은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위의 규정 중 “이 헌장의 범위내에”(within the scope of the present Charter)란 헌장에 의해 정하여진 국제연합의 권한을 의미하며,¹⁸⁾ “제12조의 경우”란 안전보장이사회가 헌장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 그리고 총회는 국제연합의 모든 권한에 관한 “토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고”도 할 수 있다. “토의”는 아주 광범하게 인정되나 “권고”는 가맹국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서만 인정된다.¹⁹⁾

그리고 국제연합 가맹국은 어떠한 분쟁 또는 국제적 마찰이나 분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해서도 총회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제35조 제1항). 국제연합 가맹국은 어떠한 “분쟁”(dispute)에 대해서만 총회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국제적 마찰이나 분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사태”(situation

17) Leland M. Goodrich, Edward Hambro and Anne Patricia Simons,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3rd ed.(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p. 106.

18) Hans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New York : Praeger, 1951), p. 198.

19) *Ibid.*, p. 211.

which might lead to international friction or give rise to a dispute)에 대해서도 총회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²⁰⁾

그러므로 국제연합의 가맹국인 대한민국은 헌장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외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국제적 마찰이나 분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사태”로 보아 이에 대해 국제연합 총회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국제연합 총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에 대해 헌장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인권침해에 관해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에 권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연합 총회에서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문제의 제기는 국제사회에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의 인권침해의 실상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²¹⁾

(나) 經濟社會理事會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는 “국제연합헌장”상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의 하나이며(제7조 제1항), 총회의 하급기관(subordinate organ)의 성격을 갖지만,²²⁾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보건적 국제사항에 관해 광범한 권한을 갖고 있다. 헌장 제62조는 경제사회이사회에 권한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보건

20) Goodrich, Hambro and Simons, *op. cit.*, *supra* n. 17 p. 271.

21) 이원웅, “유엔을 통한 북한인권문제 제3방안,”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뉴스레터」, 제16호, 1997. 12, p. 6.

22) Jorge Castaneda, *Legal Effect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p. 62.

적 국제사항과 이에 관련되는 국제사항에 관한 연구와 보고를 하거나 발의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 국제연합 가맹국 및 관계 전문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조장하기 위하여 권고할 수 있다.

위의 제1항은 경제사회이사회가 “연구”·“보고”·“발의”·“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연합의 관행에 의하면 인권문제에 관해서도 “연구”·“보고”·“발의”·“권고”해 왔다.²³⁾ 따라서 제1항과 제2항에 있어서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을 관해서도 총회와 국제연합 가맹국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헌장은 경제사회이사회는 국제연합 가맹국이나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6조 제2항). 경제사회이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역무”의 범위는 광범한 것이며,²⁵⁾ 역무의 “제공”은 경제사회이사회가 정하며 국제연합 가맹국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국가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역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요청에 응하는 역무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없다. 따라서 국가의 요청은 권리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²⁶⁾

국제연합 가맹국인 대한민국은 헌장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3) Goodrich, Hambro and Simons, *op.cit.*, *supra* n.17, p. 415.

24) *Ibid.*

25) *Ibid.*, p. 433.

26) *Ibid.*, p. 434.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경제사회이사회에 역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제사회이사회는 헌장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총회와 전문기관에 대해서도 특정의 권고를 할 수 있다.

(다) 安全保障理事會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는 국제연합의 6개의 주요기관의 하나이며(제7조 제1항), 국제연합의 실질적 최고기관이다.²⁷⁾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하여 제1차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맹국을 대리하여 행동한다(제24조 제1항).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권한(제33조 내지 제38조)과 제재조치를 취하는 권한(제38조 내지 제50조)을 갖고 있다.

1) 平和的 解決의 勸告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분쟁 또는 사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제34조),²⁸⁾ 조정절차 또는 방법을 “권고”할 수 있고(제36조),²⁹⁾ 해결조건을 “권고”할 수 있다(제37조, 제38조).³⁰⁾ 그리고 국제연합가맹국은 어떠한 분쟁이나 사태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에 주위를 환기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³¹⁾

27) Leland M. Goodrich, "The Security Council,"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12, 1958, pp. 55-56.

28) Goodrich, Hambro and Simon, *op. cit., supra* n.17, pp. 267-68.

29) *Ibid.*, pp. 277-83.

30) *Ibid.*, pp. 283-89.

31) *Ibid.*, pp. 272.

그러므로 국제연합 가맹국인 대한민국은 헌장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분쟁 또는 사태로 보아 이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에 대해 헌장 제34조·제36조·제37조·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권고할 수 있다.

2) 集團的 制裁措置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권고할 수 있고(제39조),³²⁾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당사국에 대해 “잠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40조),³³⁾ 국제연합 가맹국에 대해 “비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41조),³⁴⁾ 또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42조).³⁵⁾ 그리고 국제연합 가맹국은 어떠한 분쟁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안전보장이사회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제35조 제1항).³⁶⁾

그러므로 국제연합 가맹국인 대한민국은 헌장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에 의한 인권침해를 “평화에

32) Joseph L. Kunz "Legality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f June 25 and 27, 1950," *A.J.I.L.*, Vol.45, 1951, p. 139.

33) Kelsen, *op. cit.*, *supra* n.18, p. 930.

34) Goodrich, Hambro and Simons, *op. cit.*, *supra* n.17, pp. 311-14.

35) A. LeRoy Benne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3rd ed.(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1984), p. 140.

36) Goodrich, Hambro and Simons, *op. cit.*, *supra* n.17, p. 272.

대한 위협”으로 보아 이에 대해 잠정적 조치·비군사적 조치·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國際司法裁判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국제연합헌장”상 국제연합의 6개의 주요기관 중의 하나이며(제7조 제1항),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이다(제92조).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기관이며 동시에 독립된 법인격자이다.³⁷⁾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Statute o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따라 임무를 행한다(제92조).³⁸⁾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사건에 대한 재판”과 “법률 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하는 것이다(제95조 제96조).³⁹⁾

1) 紛爭事件에 대한 裁判

분쟁사건에 대한 재판의 당사자로 될 수 있는 것은 국가에 한하며⁴⁰⁾ 그 국가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자인 국가를 원칙으로 하고 비가맹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제93조).⁴¹⁾

분쟁사건을 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국이 분쟁을 국

37) Hans Jurgen Schlochauer,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Rudolf Bernhardt(ed.), *Encyclopa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1(Amsterdam : North-Holland, 1981), p. 74.

38) Shabti Rosenne, *The Law and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3rd ed., Vol.1(Hague : Martinus, 1997), pp. 106-107.

39) *Ibid.*, pp. 291-99.

40) Kelsen, *op. cit.*, *supra* n. 18, p. 484.

41) *Ibid.*, pp.489. ; Rosenne, *op. cit.*, *supra* n. 38, p. 616.

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여 해결하려는 “특별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규정 제40조).⁴²⁾ 이는 주권국가는 그의 의사에 반해 누구로부터도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⁴³⁾

따라서 특정조약의 일방당사자가 그 특정조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타방 당사자는 일방당사자와의 제소합의가 있는 경우에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수 있다.

국제연합의 가맹국이고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헌장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으나, 이 제소에는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데 합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과의 “특별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북한이 이러한 “특별한 합의”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방안은 현실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다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으로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의 제소로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을 갖는다(제38조)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상으로도 이와 같다(제4조).

2) 法律問題에 대한 勸告的 意見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사건에 대한 재판 이외에 법률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주는 것을 임무로 한다. 국제연합의 기관과 전문기관은 법률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제96조).⁴⁴⁾

42) *Ibid.*, pp. 333, 517.

43) H. Lauterpacht,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New York : Praeger, 1958), pp. 338-39.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국제연합의 기관과 전문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며, 국제연합의 가맹국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다.⁴⁵⁾ 그러나 국제연합의 가맹국은 국제연합기관에게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것을 요청하여 간접적으로 권고적 의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연합 가맹국은 경제사회이사회에 대해 역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제66조 제2항)⁴⁶⁾ 국제연합 가맹국은 특정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해 경제사회이사회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제연합의 가맹국인 대한민국은 헌장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사회이사회에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의 인권침해의 법률문제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경제사회이사회는 헌장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마) 國際聯合 人權委員會

국제연합 인권위원회(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국제연합헌장”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1946년 경제사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설립된 경제사회이사회에의 보조기관이다.⁴⁷⁾

1967년 6월 6일 경제사회이사회는 “결의 제1235(XLII)호”를 채택하

44) H.W.A. Thirlway, "Advisory Opinions of International Courts," in Rudolf Bernhardt(ed.), *Encyclopa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1(Amsterdam : North-Holland, 1981), p. 4.

45) D. P. O'Connell, *International Law*, Vol.2 (London : Stevens, 1970), p. 1108.

46) Goodrich, Hambro and Simons, *op. cit.*, *supra* n.17, pp. 431-34.

47) Stephen P. Marks, "Human Rights, Activities of Universal Organization," in Rudolf Bernhardt(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8 (Amsterdam : North-Holland, 1985), p. 267.

여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에 인권에 관한 경제사회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했다.⁴⁸⁾

“결의 제1235호”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대한 위반에 관계된 정보를 검토하고(examine information)(제2항) 사태를 연구하고(study of situation)(제3항), 연구의 결과에 따른 보고(report on the result of study)(제6항)를 할 권한을 인권위원회에 부여했다.⁴⁹⁾

국제연합에 의한 인권의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은 국가별 메카니즘(country mechanism)과 주제별 메카니즘(thematic mechanism)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⁵⁰⁾

국가별 메카니즘이든 주제별 메카니즘이든 이는 개별국가의 방문에 의해, 정보의 수집에 의해, 특정정부에 대한 개인이나 기구로부터의 불만의 접수에 의해, 위반에 대한 보고에 의해, 정책과 권고의 입안에 의해 수행된다.⁵¹⁾

그러므로 특정국가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타국정부는 인권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80년에 인권위원회는 행방불명자에 관한 작업단(Working Group on Disappearances)을 설치했으며,⁵²⁾ 동 작업단은 여러 정부로부터의 제보를 접수한 바 있다.⁵³⁾ 이와 같이 인권위원회는 모든 관계 정부로부터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⁵⁴⁾

48) UN,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67, p. 508.

49) Francisco Forrest Martin, et al.,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Practice*(Hague : Kluwer Law, 1997), p. 11.

50) *Ibid.*

51) *Ibid.*

52) *Ibid.*

53) *Ibid.*

54) Theo van Boven, "Creative and Dynamic Strategies for Using United Nations Institutions and Procedures : Frank Newman File," in Ellen L. Lutz, Hurst Hannum and Kathun J. Burke(eds.), *New Directions in Human Rights*(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9), p. 227.

그러므로 국제연합의 가맹국인 대한민국은 헌장 제66조 제2항의 규정과 “결의 제1235호”의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의 인권침해의 실상에 관한 정보를 인권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인권위원회는 이를 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바) 國際聯合 難民高等辦務官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은 1950년 12월 14일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로 채택된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규정”(Statutes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⁵⁵⁾ 의거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임명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되는 국제공무원이다.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⁵⁶⁾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⁵⁷⁾ 의거 이들 조약의 체결국과 협조하여 난민문제를 처리하는 국제적·비정치적·협조적·보호적인 기능을 하는 총회의 보조기관이다.⁵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이 체결국과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5조)⁵⁹⁾,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제1449(XV)호”에⁶⁰⁾ 의거 난민이 어디에 존재하

55) GA Resolution 428(V).

56) UN, *UNTS*, Vol. 189, p. 137.

57) U.N, *UNTS*, Vol. 606, p. 267.

58) Guy S. Goodwin-Gill, “The Language of Prote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Vol. 1, 1989, pp. 8-10.

59) P. Weis,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A.J.I.L.*, Vol. 48, 1954, p. 195.

60) 이 이외에 GA Resolution 1673(XVI), 1959(XVIII), 2294(XIII).

든 불문하고 이들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선(good offices)의 역할을 한다.⁶¹⁾ 그리고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규정”에 의거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은 “관계정부와 정부간 조직과의 밀접한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보호의 임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제8항 제7호).⁶²⁾ 따라서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의 기능은 보호(Protection)와 해결(solution)이라 할 수 있다.⁶³⁾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에 관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5조에 의거,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제1499(XV)호”의 규정에 의거, 그리고 “국제연합 고등판무관사무소규정” 제8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국제연합 고등판무관에게 협조·주선·접촉을 요구할 수 있다.

(2) 專門機關

(가) 國際勞動 機構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는 1919년 6월 28일에 서명된 “베르사이유 평화조약”(Versailles Peace Treaty) 제13편의 규정에 의해 국제연맹의 기관으로 설립되었다.⁶⁴⁾ 1945년 12

61) Goodwin-Gill, *op. cit.*, *supra* n. 58, p. 12.

62) P.V. Krieken, "Reparation of Refugees under International Law", *Netherland Y. B. I. L.*, Vol. 13, 1982, p. 24; Atle Grahl-Madsen, "Refugees,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in Rudolf Bernhardt(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5(Amsterdam : North-Holland, 1983), p. 257.

63) Guy S. Goodwin-Gill,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2nd ed.(Oxford : Clarendon, 1996), p. 287.

64) Arnold Toyhbee, *Major Peace Treaties of Modern History, 1648-1967*, Vol.2 (New York : Chelsen House, 1967), pp. 1508-23.

월 14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제휴협정이⁶⁵⁾ 승인되어 국제연합의 전문 기관으로 되었다.⁶⁶⁾ 국제노동기구는 250여개의 협약(convention)과 권고(recommendation)로 구성된 “국제노동법전”(International Labour Code)를 공포해 왔다.⁶⁷⁾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은 “모든 인간은 인종·신앙·성의 구별 없이 자유와 존엄, 경제적 보장과 기회균등의 조건에 있어서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부속서, 제2부 a).⁶⁸⁾ “국제노동기구헌장”(International labour Code)은 “어떤 가맹국도 타가맹국이 상호비준한 조약의 실효적인 준수를 타가맹국이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진정을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제1항).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게 실제로 이러한 국가간 절차가 이용되어 왔다.⁶⁹⁾

그러므로 국제노동기구의 가맹국인 대한민국은 헌장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제노동기구 가맹국인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이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한 조약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

65) UN, *UNTS*, Vol. 1, 1946, pp. 184-205.

66) Goodrich, Hambro and Simons, *op. cit.*, *supra* n.17, p.384; Klaus Theoder Sanson,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 Rudolf Bernhardt(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5(Amsterdam : North-Holland, 1983), pp. 87-88.

67) Martin, *et al.*, *op. cit.*, *supra* n. 49, p. 12.

68)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Provisions Proteting the Human Rights of Non-Citizens*(New York : United Nations, 1980), p. 10.

69) Marks, *op. cit.*, *supra* n. 47, p. 282.

(나) 國際聯合 敎育科學文化機構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UNESCO)는 1945년 11월 16일 설립되어 1946년 12월 14일에 제휴협정⁷⁰⁾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이다.⁷¹⁾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헌장”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목적을 “국제연합헌장이 세계의 모든 시민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정의, 법의 지배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조장하기 위하여 교육·과학·문화를 통하여 제 국민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1항).

가맹국은 총회가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제8조), 총회는 필요한 경우 국가간의 국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제4조 제3항). 그리고 1978년의 “집행위원회 결정 제104호”(Executive Board Decision 104)에 의거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개인의 제의에 대해 관계국의 평가를 들을 수 있다(제14항).⁷²⁾

그러므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가맹국인 대한민국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헌장”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한 보고를 통해, 또는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에서 국제연합가맹국으로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가맹국인⁷³⁾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의 인권문제를 제의할 수 있다.

70) UN, *UNTS*, Vol. 1, 1946, pp. 236-58.

71) Daniel G. Parton,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 Rudolf Bernhardt(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5(Amsterdam : North-Holland, 1983), p. 314.

72) Marks, *op. cit.*, *supra* n.47, p. 282.

73)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 제2조 제1항.

(다) 世界保健機構, 國際聯合食糧農業機構

이상의 전문기관 이외에⁷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⁷⁵⁾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naization : FAO)에⁷⁶⁾ 대해서도 재외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제의할 수 있다.

(3) 國際赤十字委員會

국제적십자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는 “스위스 민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1863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된 인도적 기구이다.⁷⁷⁾ 동 위원회는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갖는다.⁷⁸⁾

“국제적십자위원회정관”(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은 “제네바협약”과의 관계에서의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임무를 “제네바 제협약에 의하여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고 이들 제협약의 충실한 적용을 위하여 활동하며 또는 상기 인도주의 제협약의 위반 혐의에 관한 모든 청원을 수리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C).

국제적십자 위원회는 전시에 있어서 민간인 피보호자의 신청을 받

74) United Nations, *op. cit.*, *supra* n.65, p. 10.

75) *Ibid.*, p. 11.

76) *Ibid.*, p. 10.

77) ICRC,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No.279. 1990, p. 583.

78) 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rticle 2.

으며(제4협약 제30조 제1항). 피억류자·피보호자를 방문하고(제4협약 제30조 제3항), 포로를 방문하며(제3협약 제126조 제4항), 피구금자를 방문하고(제4협약 제76조 제6항), 인도적 활동을 수행한다(제1협약 제9조, 제2협약 제9조, 제3협약 제9조, 제4협약 제10조).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부여된 “인도적 활동”에는 “제네바협약”에 따른 보호에 영향을 주는 대표(representations)·간섭(interventions)·제의(suggestion)·실제적 조치(practical measures)가 포함된다.⁷⁹⁾ 그리고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직접적 임무는 계약국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양자의 의무에 기초한 것이다.⁸⁰⁾ 계약당사자는 “제네바 협약”상 보호를 요하는 인원의 인권이 보호되지 못했을 경우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1협약 제10조 제3항, 제2협약 제10조 제3항, 제3협약 제10조 제3항, 제4협약 제11조 제3항),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인도적 문제에 관해 충돌 당사자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정관 제4조 d).⁸¹⁾

(4) 非政府機構

(가) 國際的 非政府機構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 비정부기구(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는 정부기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그의 임무를 수행하

79) Jean S. Pictet, *Commentary, Geneva Convention I*(Geneva : ICRC, 1962), p. 109.

80) Denise Bindschedler-Robert, “Red Cross,” in Rudolf Bernhardt(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5 (Amsterdam : North-Holland, 1983), p. 251.

81) Pictet, *op. cit.*, *supra* n.79, pp. 122-23.

므로 각국정부는 이들 기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관한 정보를 국제적 비정부기구에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의 인권문제를 국제화할 수 있다.

(나) 國內的 非政府機構

인권문제에 관한 국내적 비정부기구(internal non-govenmental organization)도 정부기구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그의 임무를 수행하므로 각국정부는 이들 기구에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에 관해 대한민국정부는 이에 관한 정보를 국내적 비정부기구에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를 국제화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국제적 비정부기구와 국내적 비정부기구가 연계하여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협조를 주고 받을 수 있다.

나. 非政府次元의 方案

(1) 國際聯合

(가) 國際聯合 人權委員會

전술한 바와 같이 1967년 6월 6일 경제사회이사회는 “결의 제 1235(XLII)호”를 채택하여 인권에 관한 경제사회이사회 권한을 인권위원회에 위임했다.⁸²⁾ 그리고 1970년 5월 27일 경제사회이사회는 “결의 제1503(XLVIII)호”을 채택하여⁸³⁾ 광범위하게 사인(private

persons), 비정부조직(NGOs), 기타 집단(other groups)의 인권위원회에 대한 청원을 인정하고 있다.⁸⁴⁾ 그리고 “결의 제1503조 3호”에 의한 절차는 비밀절차(confidential procedure)로 진행되며(제7항 C), 이 비밀절차는 인권위원회가 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할 때까지 유지된다(제8항).

“결의 제1503호”의 절차에 따라 국제연합 인권센터(UN Center for Human Rights)에는 매년 수천여건의 위반사실이 집계되고 있으며, 이 집계는 분과위원회의 5인 작업단(Five-Member Working Group of Sub-Commission)에 제공되며 동작업단은 분과위원회의 매년 여름에 4주간의 모임에 앞서 2주간 회합한다.⁸⁵⁾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개인·비정부기구·기타집단은 “결의 제1503호”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비밀절차에 따라 청원할 수 있다.

(나) 經濟社會理事會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에 관한 광범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⁸⁶⁾ 국제연합가맹국은 경제사회이사회에 역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⁸⁷⁾

82) See *supra* n. 48.

83) UN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70, pp 529-31.

84) Boven, *op. cit.*, *supra* n. 54, p. 218 ; Iakob T. Moller, "Petitioning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Human Rights*, No.4, 1979, pp. 57-72.

85) Martin, *op. cit.*, *supra* n. 49, p. 10 ; Tom J. Fare and Felice Gare,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 in Adam Roberts and Benedict Kingsbury(eds.), *United Nations, Divided World*, 2nd ed.(Oxford : Clarendon, 1993), p. 276.

86) See *supra* nn. 23-24.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사회이사회절차규칙”(ECDSOC, Rule of Procedure)에 따라 비정부조직을 A카테고리·B카테고리·C카테고리로 구분하고, A카테고리·B카테고리에 속하는 비정부조직은 경제사회이사회에 서면진술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2-86규칙).⁸⁸⁾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비정부조직은 A카테고리 또는 B카테고리에 속하게 될 경우, 혹은 A카테고리 또는 B카테고리의 비정부조직을 통해서 “경제사회이사회 절차규칙” 제82-제86규칙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경제사회이사회에 서면진술을 제출할 수 있다.

(다) 國際聯合 難民高等辦務官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규정”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의 보호의 임무를 “자발적 귀환이나 새로운 국가사회 내에서의 同化를 촉진하기 위한 사적 노력(private efforts)에 대한 조력(assisting)”(제8항 제3호)⁸⁹⁾, “난민문제를 취급하는 사적 조직(private organizations)과 그가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에 따른 접촉의 수립”(제8항 제8호)⁹⁰⁾, “난민의 복지에 관한 사적 조직(private organizations)의 노력에 관한 협조의 편의제공”(제8항 제11호)⁹¹⁾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에 관한 협약” 등의 이행에 있어

87) See *supra* nn. 25-26.

88) UN,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65, pp. 513-16 ; Goodrich, Hambro and Simons, *op. cit.*, *supra* n. 17, pp. 445-46 ; Edmund Fan Osmanczyk, *Encyclopedia of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2nd ed.(New York : Taylor and Francis, 1990), p. 631.

89) P. Weis,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A.J.I.L.*, Vol. 48, 1954, p. 217.

90) *Ibid.*

91) *Ibid.*

서 개인(individuals)에 의한 감독적 기능이 행하여 진다.⁹²⁾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인·사적 조직 등은 재외 북한북한이탈주민이 그가 체재하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규정”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에게 조력·접촉·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라) 緊急救助調整官

1991년 12월 19일 국제연합총회는 “결의 제46/182호”로 “국제연합의 인도적 긴급원조의 조정 강화”(Strengthening the co-ordination of United Nations Humanitarian Emergency Assistance)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⁹³⁾

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되는 긴급구조조정관(Emergency Relief Co-ordinator)는 “결의 제46/182호”의 규정에 의거 정부기구·비정부조직과 협조하여 긴급구조의 임무를 수행한다(제10항, 제13항-제17항).⁹⁴⁾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비정부조직은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긴급구조를 위해 긴급구조조정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專門機關

(가) 國際勞動機構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노동기구의 “가맹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92) Robert Jennings and Arthur Watt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Vol. 1(London : Longman, 1992), p. 896.

93) Goodwin-Gill, *op. cit.*, *supra* n.63, p. 223.

94) *Ibid.*, pp. 223-24.

의 규정에 따라 국제노동기구에 진정을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제26조).⁹⁵⁾ 뿐만 아니라 현장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사업상이 단체”에게도 조약의 당사국이 그 조약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노동사무국에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제24조).⁹⁶⁾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사용자”와 “노동자의 사업상의 단체”는 북한 이탈주민의 체재국 당사자로 되어 있는 근로자 보호에 관한 조약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국제노동기구사무국에 신청할 수 있다.

(나) 國際聯合教育科學文化機構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헌장”은 “가맹국”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보고할 수 있으며(제8조), 국가간 국제회의에 소집될 수도 있다(제4조 제4항).⁹⁷⁾

뿐만 아니라 “민간국제기구”의 대표자를 총회의 옵저버로 초청하여(제4조 제13항), “비정부 국제기구” 또는 “준정부 국제기구”의 대표자도 총회에 옵저버로 초청된다(제4조 제14항).⁹⁸⁾ 그리고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그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계하고 있는 “민간국제기구”와 협의 또는 협력을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제기관에 특정의 임무를 청구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제11조 제4항).⁹⁹⁾

따라서 비정부기구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권한 내의 사

95) See *supra* n. 69.

96) Marks, *op. cit.*, *supra* n. 47, p. 282 ; Klaus Theodor Samson,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 Rudolf Bernhardt(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5(Amsterdam : North-Holland, 1983) p. 93.

97) See *supra* n. 72.

98) Marks, *op. cit.*, *supra* n.47, p. 281.

99) *Ibid.*, p. 281 ; Parton, *op. cit.*, *supra* n. 71, p. 317.

항에 관해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와 협의·협력할 수 있다.

그리고 1978년의 “집행위원회 결정 제1042호”에 의거 “개인”·“개인집단”·“비정부기구”도 인권의 피해자에 관해 교육과학문화기구에 제의할 수 있다(제14항 K).¹⁰⁰⁾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인권에 관한 비정부기구는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헌장”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에 옵저버로 초청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의 인권침해에 관한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문화기구와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의 인권침해에 관해 협의·협력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도 “집행위원회의 결정 제104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문화기구에 제의할 수 있다.

(3) 國際赤十字委員會

전술한 바와 같이 “제네바협약”의 “체약당사자”는 “제네바협약”상 보호를 요하는 인원의 인권이 보호되지 못했을 경우에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제1협약 제10조 제3항, 제2협약 제10조 제3항, 제3협약 제10조 제3항, 제4협약 제11조 제3항).¹⁰¹⁾

뿐만 아니라 “포로구호단체”는 포로수용소를 방문하고 포로의 역류국으로부터 편의의 제공을 받으며(제3협약 제125조 제1항), 이를 위해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지위는 방해되지 않는다(제3협약 제125조 제3항).¹⁰²⁾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제네바협약”의 위반혐의에

100) Marks, *op. cit.*, *supra* n. 47, p. 282.

101) See *supra* n. 81,

102) Jean S. Pictet, *Commentary, Geneva Convention III*(Geneva : ICRC, 1960), pp. 606-601.

관한 “모든”청원(any complaints)을 수리한다(정관 제4조 C).¹⁰³⁾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개인·개인집단·비정부기구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의 침해에 관해 청원을 할 수 있다.

(4) 非政府機構

(가) 國際的 非政府機構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 비정부기구는 개인·집단·비정부기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그의 임무를 수행하므로 개인·집단·비정부기구는 이들 기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다.

그러므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에 관하여 국내의 개인·집단·비정부기구는 이에 관한 정보를 국제적 비정부기구에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의 인권문제를 국제화할 수 있다.

(나) 國內的 非政府機構

인권문제에 관한 국내적 비정부기구도 개인·집단·비정부기구와의 의사소통에 의해 그의 임무를 수행하므로, 개인·집단·비정부기구는 이들 기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다.

그러므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에 관해 국내의 개인·집단·비정부기구는 이에 관한 정보를 국내적 비정부기구에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의 인권문제를 국제화할 수 있다.

103) ICRC, 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September, 1998, p. 2.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의 인권문제에의 개입 방안은 정부차원에서의 개입방안과 비정부차원에서의 개입방안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전자의 방안이나 후자의 방안이나 모두 여러 가지 세부방안이 제시된다.

이들 여러 가지 방안은 택일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합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관계 당국의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복합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차원에서의 방안 중에서는 국제연합 인권위원회를 통한 방안,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과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한 방안이 현실적·합리적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한 방안은 한국의 비정부기구가 “카테고리 B”에 속하도록 행정적·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實踐的·實體的 方案

가. 難民의 地位 賦與

재외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체재국이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재외 북한이탈주민은 정치적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난민이므로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주로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적 난민도 난민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재외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조국 배반죄 등 정치범으로 처형되게 되므로 이들은 난민이라는 이론을 정립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체재국 당국과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에 대해 이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해 주도록 외교적 교섭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북한 이탈주민의 체재

국의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와의 협조를 원할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내에도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를 유치하도록 관계당국과 교섭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 收容所의 設置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해 체재국내에 수용소를 설치하여 이들을 수용소에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반국제법상 대한민국은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그들의 체재국내에서 “일시적”인 “외교적 보호권”을 갖고 있으므로 수용소는 외교공관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체재국으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부여 받기 이전까지 일시적인 것이어야만 국제법상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외교공관외에 수용소를 설치하고 또는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은 후에 재외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체재국 당국과의 특별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국제법상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체재국의 국민을 명예영사로 임명하여 그 공관내에 수용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재외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할 수용소를 그들의 체재국내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체재국과 적극적인 외교적 교섭을 해야 할 것이다. 체재국이 북한을 의식하여 이 교섭에 어느정도 응해 올지는 의문이다.

다. 現地定着의 支援

재외 북한이탈주민을 체재국내에 현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도 강구되어야 한다.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현지 정착은 주로 조선족 또는 한국교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특별히 현지 종교단체 등 비정부기구와의 협조가 요구된다.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현지 정착방안은 그들이 체재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이들이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체류자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체재국과 외교적 교섭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 研究·諮問委員會의 設置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은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민한 행정적 능력이 요구된다. 각계 각층의 전문가·학자·정부실무자·비정부기구 실무자·북한이탈주민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당국은 이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근거로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마. 北韓離脫住民의 保護 및 定着에 관한 法律의 改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은 주로 한국의 영토에 들어오게 된 이후의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보호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 법률 제7조 제1항은 재외 북한이탈주민이 재외 한국공관장에게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제

8조 제2항은 제7조 제1항의 보호신청에 대한 정부의 보호여부의 결정과 그 결정을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을 개정하여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한국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제7조 제1항의 보호여부의 결정을 통일부장관의 전권사항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IV. 結 論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에 관해 상술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 보호의무는 제1차적으로는 외교적 보호권에 의한 보호의무로써 이는 이들의 국적인 남한에 있는 것이며, 제2차적으로는 영토적 비호권에 의한 보호의무로써 이는 그들이 체재하고 있는 영역인 러시아·중국 등 외국에 있는 것이며, 제3차적으로는 준영사적 기능에 의한 보호의무로써 이는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에게 각각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로,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보호와 실효적 지원방안으로 “제도적·절차적 방안”과 “실천적·실체적 방안”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전자의 방안으로 “정부차원의 방안”과 “비정부차원의 방안”으로 구분하여 가용한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방안으로 난민의 지위부여, 수용소의 설치, 현지정착의 지원, 연구·자문위원회의 설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보호방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

는 것에 우선권을 둘 것인가는, 사실발견임무(fact finding missions), 시행관찰(trial observation), 로비와 정책지지(lobbying and policy advocacy), 매체운동과 기타 일반대중의 노력(media campaigns and other grassroots efforts) 등을 고려하여¹⁰⁴⁾ 정책결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자유·정의·평화의 기본이 되며(세계인권선언 전문), 동시에 한반도의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 된다. 인권 앞에 너와 내가 없고 오직 우리 형제가 있을 뿐이다.

104) Francisco F. Mart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Practice*(Hague : Kluwer Law, 1997), pp. 1345-51.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심리적 갈등구조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

전 우 택
(연세대학교)

I. 서 론

그동안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김명세, 1996; 김병로, 1994; 민성길과 전우택, 1995; 박종철 등, 1996; 오혜정, 1995; 윤덕용과 강태규, 1997; 이정우와 김형수, 1996; 전우택, 1995, 1997ab; 전우택 등, 1997; 제성호, 1996; 통일부, 1999).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은 세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인도적인 측면이다. 같은 민족으로서 열악한 조건의 북한에서 살다가 낯선 남한 사회에 들어와 살게된 북한 동포들을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인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둘째는 통일 과정에서의 중요성이다. 탈북자들이 성공적으로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 남한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남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

도를 가지고 임하게 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도 남한에 들어간 북한 출신 사람들이 남한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그들의 남한에 대한 태도, 그리고 통일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통일 이후의 민족의 통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반세기가 넘는 분단과 극단적인 사상적, 군사적 대립, 그리고 교류의 단절로 인하여 남북한 사람들은 많이 이질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이화수, 1999; 전우택 등, 1997). 이와 같이 이질화된 남북한 사람들이 통일 이후에 함께 살게 되는 새로운 통일 사회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미리 보고 그에 대한 예상과 준비를 하는데 있어 탈북자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 남한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은 비록 그 숫자는 많지 않다 할지라도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민족 통합에 큰 의미를 가지는 존재들이므로 그들의 남한 사회 적응은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은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정치 사상적 적응 측면이다. 이것은 북한에서 세뇌 식으로 교육 받아온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에 의한 획일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유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정도와 과정을 말한다. 그런데 그동안 탈북자들은 이러한 측면의 적응에서는 큰 어려움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우택, 1997a). 이것은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자발적으로 북한 체제를 떠나 온 사람들이고 체제와 사상이 완전히 통합되어 있는 북한 사회를 탈출하여 나온다는 그 자체가 곧 주체사상에서도 탈출하여 나온다는 것으로 탈북자들이 인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평등과 공정한 사회적 부의 분배 등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

본적인 가치관에는 나름대로 부분적인 동조를 하는 면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공산주의 사상에서부터 비교적 큰 갈등 없이 벗어나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탈북자 거의 모두에게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경제적 적응 측면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에서 이들이 새로운 경제체제를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경제 활동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 경제적인 적응은 그 탈북자가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윤덕용과 강태규, 1997; 선한승, 1995). 이 때 탈북자들의 경제적 적응, 즉 돈을 버는 능력에는 매우 큰 개인 차이가 있다 할 수 있다. 즉 개인 사업까지 벌려 크게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하여 직장조차 가지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늘 처해있는 사람들까지 다양하게 있는 것이다(윤덕용과 강태규, 1997; 통일부, 1999).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적응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이 남한 사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그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져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 등 심리적, 사회적 적응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경제적 자립 의지와 능력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일은 그들의 남한 사회 적응 전체를 위하여 매우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세 번째로는 심리적 적응 측면이다. 한 탈북자가 설사 위에서 언급한 정치 사상적, 경제적 적응을 성공적으로 잘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가 남한 사회에 적응을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남한 사회 적응이란 그 두 가지 측면의 적응보다도 더 예민하고 복잡한 심리적 적응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은 이들이 매우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들을 가지

고 있음을 나타내 보인다(오혜정, 1995; 전우택, 1997a; 전우택 등, 1997).

그러므로 탈북자들은 그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있어서 정치 사상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큰 어려움이 없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개인차가 큰 반면에,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는 거의 모두가 비교적 큰 어려움을 가진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글의 목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 적응에서 가지게 되는 심리적 어려움들의 구조를 분석해 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 지원에 구체적인 지침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II. 탈북자들의 심리적 갈등에 대하여

한 인간이 새로운 사회에 들어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적응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탈북자들에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이 지금 와 있어야 할 곳에 적절하게 잘 와 있다는 의식이다. 즉 북한을 탈출하여 최종적으로 들어온 이 남한 사회가 자신이 마땅히 들어와야 했던 바로 그 사회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만족하게 느끼는 감정을 가진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이 남한에 들어와 살면서 이곳은 내가 목숨을 걸고 들어 오려 했던 그런 가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식의 느낌을 가진다면 그것은 심리적으로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둘째, 새로 정착하는 이 사회에서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방식과 속도로 해결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즉 탈북자들은 비록 남한 사회에 들어 온 것 자체는 적절한 일이었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이 곳에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도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로지 수동적으로 반응하며 기다리고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셋째는 소속감이다. 이것은 자신이 이 남한 사회에 소속되어 있고, 남한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도 받으면서,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살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지 못한다면 비록 앞의 두 가지 의식을 잘 가진다 할지라도 탈북자들은 심리적 갈등을 가지게 된다. 탈북자들의 심리적 적응이 가진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그동안 탈북자들의 남한에서의 생활은 매우 불안정한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탈북자들은 남한에 들어와 남한 정부의 정착 지원금도 받았고 직장을 가지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받았고, 언론의 관심도 받았으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며 일상 생활을 하는데 비교적 용이한 것 등의 긍정적인 경험들을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남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매우 특수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남한 사람들이 통일 자체에 관심이 별로 없어 탈북자들에게도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남한 정부의 지원도 자신들의 기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등의 부정적인 경험들도 하였다(전우택 등, 1997).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과연 이 남한이라는 사회가 자신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나와 정착을 하여야 하는 그 최종 목적지여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으로 있게 되었다.

둘째, 탈북자들은 워낙 사회 성격에 큰 차이가 있는 남한 사회에 들어와 적응을 하며 아주 큰 문제에서부터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이것은 마치 갓난아기가 새로 세상을 배워 나가는 것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미 성인으로서 나름대로의 생각과 경험을 다 가

지고 있는 이들 탈북자들은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로의 심리적 퇴행을 체험할 수밖에 없었고,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 정부나, 담당 보호경찰관이나, 또는 자신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존을 하고, 그들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따라야 하는 상황을 계속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갈등을 계속 만들게 되었다.

셋째, 이들은 소속감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과 완전히 단절된 가운데 남한 사회 속에서 살면서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도 않고 갈 곳도 없다. 처음 가게 되는 모임이나 집단마다 처음에는 크게 관심도 보여주고 환영을 하지만 그것이 전부다. 늘 이방인이고 특별한 인간 취급만을 받는다. 직장에서도조차 많은 탈북자들은 제대로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을 배정 받지 못하면서 소속감을 못 느낄 때가 많다. 북한을 떠나 왔으나 여전히 그들은 “북한 사람”으로 남한에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에 힘들어 한다. 이러한 소속감의 문제가 이들에게 심리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III. 탈북자들의 양가감정 갈등 구조 분석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며 가지는 심리적 갈등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공통 구조가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양가 감정에 의한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양가 감정이란 두 개의 공존할 수 없어 보이는 감정, 생각, 인식, 충동이 동시에 한 사람의 마음속에 공존하는 심리적 갈등 상태를 나타내는 정신의학적 용어이다 (Kaplan 과 Sadock, 1998). 이제부터는 탈북자들이 가

지고 있는 이러한 양가 감정을 봄으로써 이들의 심리적 갈등을 이해해 보도록 한다.

1. 탈북자는 특별한 사람이나 보통 사람이나?

탈북자들은 반세기동안 분단되어 극단적인 대치상태에 있던 남북한 사이를 물리적으로 이동하였다는 의미만으로도 민족적으로, 그리고 통일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다. 즉 민족의 통일에 있어 일종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통일 이후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현상들과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전우택 등, 1997). 그러나 동시에 그들 대부분은 평범하게 북한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북한에서 살아왔던 북한의 “보통 사람들“이다. 즉 무슨 통일의 큰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한 사상적 고민을 하다가 민족 통일을 위하여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들어오는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북한을 떠난 북한의 “보통 사람“들이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탈북자들이란 개인적인 이유에 의하여 행동을 하였으나 그것이 민족 전체에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된, “특별한 보통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은 탈북자들의 특수한 상황이 이들에게 일종의 심리적 혼란을 구조적으로 주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 스스로 가진 혼란이라기보다는 그들을 받은 남한의 태도에 의하여 촉발된 측면이 많다. 즉 남한에서는 이들을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 자유 대한의

품으로 넘어온 귀순용사“라는 식의 태도로 이들을 대하였고 이들을 여러 반공 강연의 연사와 TV 프로그램 등에 출연자로 출연시켜 북한의 실상을 남한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도록 하는 역할을 가지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이들 탈북자들은 자신들이 한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에 이런 큰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갑자기 체험하게 되었고 그것에 빠르게 “적응“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한이 탈북자들을 “영웅적인 귀순 용사“로만 보고 이들을 그에 걸맞게 계속하여 일관성 있게 대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남한은 이들 “보통 사람“인 탈북자들이 자본주의의 냉엄한 남한의 현실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는 이들이 남한 사회의 중·하층 계급에 편입되어 일반 사무직이나 또는 노동자로서, 북한에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근면하게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러 방법과 기회를 통하여 탈북자들에게 남한 사회를 이해시키고 일을 열심히 할 것을 주입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즉 “보통 사람“으로서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 내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정신 자세를 주입하려고 노력한 것이며 탈북자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남한 사회 속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이것을 절실하게 체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특별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보통 사람“ 취급을 받는 가운데 탈북자들은 일종의 자아정체성 형성 혼란을 가지게 된다. 심리적으로 성숙하여 자신의 이런 이중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받아들일 능력이 있는 탈북자들에게는 이것이 극복할 만한 과제가 될 수 있겠으나, 그러지 못하는 탈북자들에게 이 혼란은 그들의 모든 생활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2. 남한 정부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나 독립이나?

위에서 언급된 심리적 갈등은 탈북자들의 모든 생활과 생각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 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탈북자들의 남한 정부에 대한 심리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먼저 북한 사회의 통치 방법중 하나인 “영웅 따라하기“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북한에서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소위 “공화국 영웅“을 선정하고 그를 하나의 역할 모델(role model)로 하여 전 인민들로 하여금 그 영웅을 따라 행동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과정에서 그 “영웅“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북한 정부“가 파격적으로 모든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9년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마라톤 금메달리스트가 된 정성옥은 “영웅“이 되었고 그녀에게 김정일은 평양시 내에 고급 아파트를 주고 그들 가족들에게 평양에 있는 직장을 가지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주었다. 그런데 이것은 정성옥의 경우만이 아니라, 그동안 북한에서는 늘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이라 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하면 북한 주민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남한에서의 강연자로서의 경험, TV 출연 등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남한에 넘어오는 일을 감행한 일종의 “영웅“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고 점차로 그것을 강화하게 된다. 그러면서 북한에서처럼 “남한 정부“가 파격적인 혜택을 자신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그들로 남한 정부에 대한 경제적 기대를 크게 하고 그에 따라 남한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려는 심리를 가지게 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즉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단순히 정

부의 배급을 받으며 살아온 경험 때문에 남한 정부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다고 보다는 이들의 북한에서의 “영웅“ 대우에 대한 보고 들은 경험들이 이들로 하여금 남한 정부에 대하여 경제적인 전적인 의존 기대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남한 정부가 자신들에게 정해진 교육기간(하나원)과 2년 간의 보호관찰 기간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반발하는 측면을 가진다. 자유를 찾아 남한에 왔는데, 여기서도 북한에서처럼 강제로 교육도 시키고 감시도 한다는 것에 반발하는 것이며 자신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내보 달라는 요구들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아직 남한 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가운데 있게 되는 일이므로 이해할 만한 반응이다. 다만 여기서 눈 여겨 볼만한 것은 탈북자들이 경제적으로는 남한 정부에 완전히 의존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일상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의 어떤 형태의 간섭도 받지 않는 완전 독립을 원하는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로 심리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3. 돈을 무서워 할 것인가 우습게 여길 것인가?

연구자는 한 연구에서 탈북자들이 돈을 절실하게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돈에 노예가 되기 싫다는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었다(전우택 등, 1997). 그러나 이들이 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양가 감정은 돈 자체에 대한 양가 감정 이외에도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실제로 탈북자들의 입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다. 정부의 정착지원금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그 외에도 반공 강연에 나가 강연을 하여 강사료를 받는 일도 비교적 쉬운 돈벌이이다. 그리고 교회 등과 연관되어 교회에 나가면서 교회로부터 매 달 생활 지원금을 받는 것도 그 방법이다. 둘째는 어렵게 돈을 버는 방법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여 돈을 버는 방법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 훈련이 부족하여 고급 직종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일반 사무직이나 노동직에서 일을 하게 되기에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이 길고 노동의 강도도 강할 수밖에 없게 된다(윤덕용과 강태규, 1997; 선한승, 1995). 즉 북한에서처럼 대충 시간만 때워서 직장 유지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이야기한 돈을 버는 두 가지 방법 중 전자의 방법이 더 쉬우면서도 더 많은 액수를 벌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어렵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쉽고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너무 크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들의 관심이 물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탈북자들이 다 강연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자신들끼리 늘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이런 소문, 저런 소식들을 듣고 자신의 처지와 매우 민감하게 비교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직접 강연료를 받았거나 교회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들은 다른 탈북자들의 경험까지를 자신들의 간접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단 한 명이 받은 혜택도 전체 탈북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 되고 만다. 실제로 남한 사회 정착 초기에 빨리 안정된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모든 점에서 안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은 정착 초기에 직장보다는 강연과 교회 지원금 타는 것 등

쉽게 돈을 버는 방법에 관심을 보이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 이것이 이들의 성공적인 남한 사회 적응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결국 탈북자들은 쉽게 돈을 벌면서는 돈이 우습게 보이지만, 돈을 힘들게 벌면서는 돈을 무섭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경험을 동시에 하면서 돈에 대한 양가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의식 속에서 잘 통합되지 않을 때 이들은 감정적인 혼란을 가지게 된다. 돈에 대한 극심한 양가감정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극심한 심리적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두고 온 가족들을 잊어버려야 하나 기억하여야 하나?

탈북자들이 가진 심리적 고통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그들의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이었다(오혜정, 1995; 전우택, 1997a; 전우택 등, 1997). 그 가족들이 자신들 때문에 강제수용소로 옮겨가는 등의 큰 고통을 받을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매일 밤마다 악몽을 꾸는 경우도 있었고 우울증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은 오히려 이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었다. 즉 지금은 자신이 어쩔 수 없어 여기에 와 있고,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그런 가족들의 고통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통일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여기서 한 눈 팔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한 현실에 빨리 적응하고, 심리적 방황도 적은 가운데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심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늘 심한 우울증을 가지고 술을 과도하게 마시는 등의 병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었다.

그러므로 탈북자들에게 있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잊을 수도, 그렇다고 기억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그들에게 양가 감정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대상들이 되었다. 그동안 탈북자들은 주로 단독 탈출한 젊은 남성들이 많았고, 이들은 북한에서 결혼을 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남한에 들어와 남한 여자와 결혼을 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남한에서의 결혼은 이들 탈북자들로 남한 사회에 소속감을 가지게 하고 정상적인 사회 적응을 하는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전우택, 1997a).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결혼은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와 자식들, 가족들에 대한 죄의식을 더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어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양가감정을 야기하는 측면을 가지게 하였다.

더구나 최근 들어 북한을 가족 단위로 탈출하여 전원이 남한에 들어오는데 성공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서 이들의 심리적 갈등은 더 커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가족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모두 중국에 들어간 후에, 가족 중에 일부만이 남한에 먼저 들어와 자신들이 받은 정착지원금을 이용하여 나머지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들 중 일부를 다시 남한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다시 받게 된 정착금을 이용하여 또 나머지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남한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시도들이 있게 되면서 탈북자들의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게 되었다. 즉 단독 탈출을 하여 나머지 모든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탈북자들은 북한내의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이 더 강해지게 되었고, 그들과 연락을 취하려는 시도들을 더 하고 싶어지게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남한에서 새로 결혼을 한 사람들은 남한과 북

한에 있는 배우자들과 가족들에게 더욱 심한 양가 감정을 느끼게 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또한 남북한 관계와 통일의 진척 정도에 따라 이들 탈북자들은 통일에 대한 희망이 커질수록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그에 따라 어떤 탈북자들에게는 심리적인 갈등도 더 커지는 이중적인 문제들이 탈북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5. 탈북자들은 남한 사람인가 북한사람인가?

본 연구자가 실시한 한 연구에서는 이들 탈북자들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를 조사한 바 있었다. 거기서 탈북자들은 자신들을 남한 사람도, 북한 사람도 아닌,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대답들을 가장 많이 하였었다. 그리고 남북한이 축구 시합을 하여도 양쪽 모두를 응원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이 있었다(1994년 입국자 19명 중 11명(57.9%), 95년 입국자 31명 중 22명 (71%), 96년 입국자 18명 중 12명 (75%)). 즉 이들은 남한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완전히 자신을 남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양쪽 모두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전우택, 1997a). 이러한 이들의 감정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남한에 들어와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남한에 대한 소속감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어 보였다. 그리고 남북한 사이의 관계가 호전되고 전쟁에 의하지 않은 통일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수록 양쪽 모두에 속하여 있다는 식의 의식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남북한의 관계가 나빠지고 대립할수록 이들은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으며 그러나 그것을 명확히 심정적으로 정리할 수 없어 양가 감정적 갈등이 강해지는 것

으로 보였다. 또한 남한 사회가 자신을 잘 받아주고 있고, 자신이 이곳에서 잘 적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남한에 대한 소속감이 커지지만, 직장도 가지지 못하고, 남한 사회에서 배척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할수록 이들의 양가 감정적 갈등은 더 커지는 것으로 보였다.

탈북자들의 이런 자아정체성과 소속감의 문제는 이들이 북한 탈북자들끼리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정보를 얻고 집단 행동을 취하려는 태도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라는 사회가 극도로 통제되어 있고 정상적인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상호 감시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은 늘 말조심을 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paranoid), 일종의 소문(루머)이 강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워낙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여는 가질 수 없는 정보들을 늘 의식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은밀한 루머에 더 민감한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당이나 국가의 공식 발표보다 오히려 더 신뢰하려는 태도를 가면서 살아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에서 이들이 생존하기 위하여 가졌던 생존 방식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남한에서 살게 된 탈북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는 바뀌었으나, 여전히 북한에서 습득된 태도로 남한에서도 생존해 내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늘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들과 관련된 소문(루머)에 매우 민감한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그 내용이 설사 어처구니없는 잘못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쉽게 의존하려는 태도까지를 보인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보호업무를 맡았던 보호경찰관들은 탈북자들끼리 모여 소문을 주고받는 것이 그들의 건강한 적응에 큰 장애가 된다고 이야기 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 역시 이들이 자신들을 아직 완전한 남한 사람들과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이 남한 사회에 완전히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남한

사회 내의 정상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기에 자신들은 아직 충분히 남한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는 의식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탈북자들에 대한 조심스러운 태도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는 양가 감정적 갈등을 가지는 것이다.

IV. 탈북자들의 심리적 갈등 극복을 위한 제언

위에서 본 탈북자들의 양가 감정적 갈등은 이들의 건강한 심리적 적응에 장애물이 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해결을 돕는 것이 탈북자들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1. 탈북자들에게 양가 감정을 더욱 조장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탈북자들의 양가감정은 각자의 개인적인 이유에 의한 개인적인 현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사회 환경과 남한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들의 양가감정을 더욱 조장할 만한 사회 정책이나 국가 정책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좀더 세분화한다면 다음과 같다.

가. 탈북자들에게 자신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정확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탈북자들에게 그들이 강연 연자로 나가거나 TV에 출연하는 것은 그들이 북한식 “영웅”이기 때문이 아니며 따라서 그들도 북한식 영웅으로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적절히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그들은 분명히 민족 통일을 위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진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곧 그들이 평생 일을 안하고도 북한의 “영웅”들처럼 국가 혜택만 받으며 잘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잘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탈북자들을 직접 대하는 사람들은 일관성 있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탈북자들을 대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남한 정부의 탈북자 지원 정책이 일방적으로 그들의 의존성을 키우게 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탈북자들이 정착 지원금으로 목돈을 한꺼번에 일방적으로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들이 그런 많은 액수(탈북자들이 보기에는 무척 적다고도 할 수 있지만)의 목돈을 그들의 아무런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은 그들이 아직 그런 목돈을 받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목돈이 아니라 남한에서의 안정된 직업 능력과 직장이라는 점, 탈북자들의 돈을 벌 수 있는 개인차가 커서 어떤 탈북자들은 정착 초기부터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잘 벌 수 있어 실제로는 정착 지원금이 따로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의 목돈이 정착에 많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등에서 이것은 다시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

한 식의 보상은 이들에게 위에서 언급한 심리적 양가 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국가의 지원은 탈북자들의 자립 능력과 자립 의지에 맞추어 그들의 기본적 생활 지원 영역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나이가 많고 건강이 나빠 도저히 자기 스스로 돈을 벌기 어려운 사람은 평생 생활보호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여야 하지만, 능력은 있고 자립 의지는 없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지원이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은 탈북자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빨리 편입하는 것을 유도하는 국가 지원이 되어야 한다.

다. 교회와 시민단체들의 탈북자 지원 방식이 단순 금전 지원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탈북자들을 지원하려고 애쓰는 민간 단체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그런 지원이 진정으로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그러한 지원이 탈북자들의 의존심을 높이고 그들의 돈에 대한 양가 감정적 갈등을 높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단순히 매달 얼마의 돈을 무조건 지원해 주는 방식은 위험하다. 그러한 지원에는 반드시 어떤 노동(예를 들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시민 단체 사무실 일을 돕거나, 회보에 원고를 쓰도록 하거나 하는 등의)이 요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에 동의를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지원을 하는 제도를 가져야만 탈북자들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되고 지원하는 쪽에서도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것이다.

2. 탈북자들에 대한 심리적, 정신 건강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 지적된 탈북자들의 양가 감정에 의한 갈등은 그 개인의 선택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많은 문제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요소 등에 의하여 이러한 갈등이 더욱 심하게 있을 수 있을 수 있게 된다. 이때 탈북자들 중에는 이러한 심리적 갈등을 어떤 형태로든 극복하지 못하고 중대한 적응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심한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보이고 그에 따라 제대로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 등의 사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는 알콜 중독, 범죄 행동, 자살 시도까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꼭 탈북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 편입되어 들어가 제대로 적응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디서나 나타나는 문제이다(전우택, 1997b; Westermeyer, 1989). 따라서 이러한 탈북자들의 심리적 갈등과 적응 장애를 사전에 선별하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전체 탈북자 지원 시스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탈북자들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첫째, 전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기 선별(early screening)이다. 이것은 모든 탈북자들에게 가급적이면 일찍 그들이 심리적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신 건강과 심리적 능력(capacity)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선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탈북자들은 나름대로의 좋은 심리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모두가 다 적응과정에서 양가감정에 의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별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상되는 심리적 갈등을 미리 교육도 시키고, 또한 특히 적응상의 어려움

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선별하여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둘째, 선별된 탈북자들에게 치료 및 증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첫 단계에서 선별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그런 심리적 갈등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개인 면담, 집단 면담, 정기적 평가, 개인적 지원 대책 마련, 필요에 따라서는 정신의학적 치료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초기 선별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남한 사회 속에서 생활을 해가면서 문제가 심각해진 사람들도 추가적으로 포함되도록 되어야 한다.

3. 탈북자들의 양가 감정을 남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남한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북자들의 심리적 양가 감정을 바라보는 남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양가 감정이 탈북자들의 심리적 미성숙이나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이러한 양가 감정은 탈북자들과 같은 성장 배경과 입장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심리 상태임을 남한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북한의 분단과 갈등 상황 자체가 모순된 양가 감정적인 대립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분단과 연관된 모든 감정들은 양가 감정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우리와 같은 동포의 나라인 동시에 우리와 극한적 대립을 하고 있는 전 세계의 유일한 국가이다.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인 동시에 그 같은 언어를 가지고 가장 격렬한 비난을 주고받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마치 탈북자들만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남한 사람들도 북한과 탈북자들에게 대하여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남한 사람들에게도 혼란과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탈북자들의 양가 감정만을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인은 누구나, 남한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통일 문제에 있어 양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가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북한 사람들 전체와 통일에 대하여 더 객관적이고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난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편입되어 적응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그 사회가 얼마나 타문화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들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보고되었다 (Beiser 등, 1988; Berry 등, 1977; Dion 등, 1978; Murphy, 1965; Willie 등, 1973). 따라서 남한 사회에 있어서도 탈북자들이라고 하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높이는 것은 통일의 준비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여기에는 탈북자들을 좀더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탈북자들은 마치 백지 상태의 갓난아이처럼 남한 사회에 들어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북한에서 모든 성장 과정을 마치고 교육을 받아 한 명의 독립되고 완성된 사람들로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과거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들 탈북자들은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열악한 북한에서 살아야 했고, 그곳에서

조차 계속 살수 없는 어려움을 가져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남한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지나야만 했던 사람들이다. 이것만으로도 이들은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인 것이다. 거기에다 더하여 이들은 남한 사회에 새로이 적응하면서 많은 양가 감정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 명의 탈북자를 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탈북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V. 마치는 말

누구나 사람들은 심리적인 갈등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 그리고 그 많은 갈등들은 양가 감정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탈북자들도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꼭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다. 누구나 그런 갈등을 통하여,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경험을 통하여 그는 인간적으로 더 강하고 성숙한 존재로 변해가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살 때도 갈등은 많았을 것이다. 따라서 남한에서도 그런 심리적 갈등이 있다고 당황할 것은 없다. 침착하게 그 갈등의 실체를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해결해 간다면 그것이 남한에 들어온 진정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될 것이다.

민족적으로도 탈북자들이 가지는 이러한 양가 감정적 갈등은 의미가 있다. 탈북자들은 민족 전체의 모순과 갈등을 가장 먼저, 그리고 예민하게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갈등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그들에게 진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하여, 분단되고 이질화된 우리 민족에게 있어야만 하는 진정한 “사람의 통일“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동배 (1996) :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민간 차원의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주최 탈북자 대책을 위한 대토론회.
- 김명세 (1996) : 탈북자의 사회 적응은 민족 화합의 예비과정. 탈북자들의 남한생활 적응을 위한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토론회.
- 김병로 (1994) :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정책자료.
- 민병천 (1980) : 월남귀순자의 자유사회적응과정 실태 조사. 국토통일연구원 조사연구실
- 민성길, 전우택 (1995) : 사람의 통일 - 정신의학적 접근. 송자, 이영선 편. 통일 사회로 가는 길. 서울. 오름 출판. p. 72-110
- 박영규 (1996) : 귀순자 사회 적응 어떻게 할 것인가? 월간 북한. P. 58-67
- 박종철, 김영윤, 이우영 (1996) :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실태조사 및 개진 방향. 민족통일연구원
- 선한승 (1995) : 북한 노동력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오혜정 (1995) : 귀순북한동포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 -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석사학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 윤덕용, 강태규 (1997) :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및 대책 : 탈북자들의 경제문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1권 2호. p. 169-205
- 윤여상 (1994) : 귀순북한 동포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 윤여상 (1995) : 남한의 귀순동포에 대한 정책 연구. 영남정치학회보 제 5호

- 이만식 (1996) : 탈북 북한 주민 체제적응 현황과 과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해외민족연구소 공동주최 통일 정책 대토론회.
- 이장호 (1996) : 남한이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 접근. 크 리스찬 아카데미 남북관계 대화모임. [탈북자 지원을 위한 대책 과 과제] 1996.9.20
- 이정우, 김형수 (1996) : 탈북이주자 사회 정착지원 개선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종훈 (1996) : 남한 이주 북한 동포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정비방향. 현안분석 제 119호. 국회입법조사분석실.
- 이화수 (1999) : 통일 한국의 정치심리학 - 남북한간 인성통합을 위하여. 서울. 나남출판
- 전우택 (1995) : 통일 후 예상되는 북한 주민들의 통일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난민, 한국인 이민자, 북한 귀순자를 중심으로. 통일원 95 북한 및 통일 연구 논문집 p. 1-66
- 전우택 (1997a) :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 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2 p. 109-167.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전우택 (1997b) : 난민들의 정신건강과 생활 적응에 대한 고찰 및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전망과 대책. 신경정신의학 36:1 p. 3-18
- 전우택, 민성길, 이만홍, 이은설 (1997) : 북한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6:1 p. 145-161
- 제성호 (1996) : 북한 귀순자 보호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형사정책연구 제7권 1호.
- 통일부 (1999) : 북한이탈주민 지원현황
- Kaplan HI, Sadock BJ (1998) : Synopsis of Psychiatry. 8th ed. Williams and Wilkins.

- Beiser, M., Barwick, C., & Berry, J. W. et al., (1988). After the Door Has Been Opened. (Report of Taskforce on Mental Health Issues Affecting Immigrants and Refugees). Ottawa: Multiculturalism & Citizenship and Health & Welfare.
- Berry, J. W., Kalin, R., & Taylor, D. M. (1977). Multiculturalism and Ethnic Attitudes in Canada. Ottawa: Government of Canada.
- Dion, K., earn, B., & Yee, P. (1978). T도 experience of being a victim of prejudice: An experimenta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3, 290-303
- Kaplan HI, Sadock BJ (1998) : Synopsis of Psychiatry. 8th ed. Willams and Wilkins.
- Murphy, H.B. M. (1965). Migration and the major mental disorders: A reappraisal. In: M. B. Kantor (Ed.), Mobility and Mental Health. Springfield: Thomas.
- Westemeyer, J. (1989). Psychiatric Care of Migrants: A Clinical Gude. (Washington, DC: Amer. Psychiatric Press Inc.

〈 토 론 〉

사회자: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생존을 위해 제3국으로 탈출하는 북한주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문제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문제와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문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문제이고, 후자는 국내입국 탈북자(귀순자)의 우리사회 정착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는 등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시급한 실정인데, 김명기 교수님의 논문은 국제법적 시각에서 이러한 문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취직난과 실업, 불안정한 경제생활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우택 교수님께서 주로 정신적인 측면에서 탈북자들이 겪는 갈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오늘 두분의 훌륭한 논문에 대해 토론에 나설 여러 선생님들은 정부와 학계, 민간단체 등에서 탈북자문제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좋은 토론을 해주셔서 향후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길 기대합니다.

김종훈: 통상적으로 난민문제는 A국적의 사람들이 B국가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 과정을 거쳐, 체류하다가 궁극적으로 i) 본국으로 귀환, ii) 제3국으로 재정착, iii) B국가에서 현지 정착, iv) 난민 불인정시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난민문제 해결의 주체는 국적국(A)과 난민체류국(B)이며, 제3국은 난민이 자국에서 재정착하는 과정에서 관여하게 됩니다. 또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HCR)은 난민 보호와 난민협약 준수와 관련하여 관여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는 A국적(북한) 사람들이 체류국인 B국가(중국)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실정에서, 본국으로 강제송환시 처벌이 우려됨에 따라 제3국과 UNHCR이 동포애, 인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문제의 해결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A국가와 B국가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양국간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난민협약 당사국(82년도 가입)이나, 난민지위 심사에 관한 국내적 절차를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아 중국에서 난민협약에 의거하여 난민지위를 인정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난민협약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탈북자를 난민으로서 보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국은 탈북자 문제는 난민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중·북한간의 불법체류자 처리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난민문제, 인권적·인도적 문제로 보는 한국 및 UNHCR의 입장과는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UNHCR에 의하여 Z난민으로 보호받는 사실만으로 난민의 국적이 변경되거나, 무국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난민이 국적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상태와 국적변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탈북

자가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난민임에도 적절한 국제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제적으로 이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이 자동적으로 우리 나라에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법적으로 한국과 북한은 별개의 유엔 회원국입니다.

탈북자 문제 관련국 및 UNHCR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초로 할 때에만 탈북자 보호 제일주의 원칙하에서 탈북자 문제의 실효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실있는 대 중국외교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탈북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북한에 강제송환 되지 않도록 중국측의 협조를 확보하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국내에 수용소를 설치하는 방안은 국제법과 현실에 비추어 실현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UNHCR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타 국제기구에서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법적·제도적으로 현실적 방안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국내 NGO의 활동은 탈북자 보호 우선의 원칙하에서 국내외적으로 탈북자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시급성을 부각시키고, 필요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동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탈북자 발생의 근본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활동이 보다 설득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국내적으로 난민문제와 국내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관심과 개선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여상: 분단국가에서 이탈자의 발생은 상호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탈북자의 발생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 모두에게 현실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로 대량 탈출하므로써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탈북자는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와 재외 탈북자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재외 탈북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1990년대 중반 이후 재외 탈북자의 규모가 급격히 증대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중국과 몽고에서 10만명 수준이 체류하고 있으며 러시아 지역에도 2,000여명 수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상당수의 탈북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재외 탈북자의 열악한 생활조건과 인권유린 행위의 발생입니다. 재외 탈북자는 신변에 대한 위협 때문에 열악한 생활환경을 감수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국내의 NGO와 UN 산하기구들의 활동으로 국제사회에 이들의 현실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외 탈북자에 대한 관심은 이들의 보호와 지원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활동은 체제국의 비협조와 북한의 위협, 한국 정부의 제한적 활동 등으로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일부의 NGO와 개별 활동가들에 의해 매우 제한적 범위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재외 탈북자에 대한 보호 의무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체제국과 한국정부에 있으며 국내법의 규정과 해석을 살펴보면 재외탈북자의 보호의무 또한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정부는 체제국의 협조와 목인이 없는 상황속에서 직접적인 보호와 지원활동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탈북자가 체류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들의 난민지위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북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효적 방안은 먼저, 탈북자의 신변안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체제국과의 외교적 교섭 능력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UN과 관련 국제기구, 그리고 관련 NOG들을 활용하여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체제국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과 보호를 위한 체제국과의 협상은 한국 정부가 아닌 UNHCR과 ICRC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한국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정보와 비용지원 등 측면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탈북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활동은 NGO들이 담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체제국의 인권단체와 국제적인 NGO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정부와 국내 NOG들간의 역할 분담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재외 탈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다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으로의 자발적 귀환입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는 북한으로의 귀환시 받게 될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으로의 귀환이 가능할 경우 귀환을 권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지정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지 체류 탈북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한국행으로 잔여 가족들이 받게될 탄압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북한으로의 귀환 가능성이 남아있는 현지체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재외 탈북자의 현지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외 탈북자가 현지 공관에 보호를 요청할 경우 임시보호 조치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법상으로는 난민지위 부여 전까지 외교공관내에서 임시보호를 행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지 공관은 위장 탈북자 선별의 애로와 함께 대지가 협소하고 공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외교공관밖에 설치할 경우 체제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현지 체제국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현지 UNHCR 사무소와 인권단체들의 협조를 받는다면 부분적인 성과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한국으로의 입국입니다. 현지 체류국에서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한국행 희망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한국행은 최후의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북한으로의 귀환이 불가능할 경우 현지정착을 시도하고, 최악의 경우 한국행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의 수용여건이 미비하고 기존 탈북자들의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현지정착을 더욱 유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 수준의 현지 정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체제국의 비협조와 열악한 생활환경, 인권유린 등으로 현지정착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또한 현지 정착을 권유할 경우 선별수용과 그 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누가 보호해야 하는가?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보호할 수 있는가? 어디에서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입국 탈북자는 현재 1,050여명 수준이며, 99년도 입국자는 113명(99.11.27)이 넘어섰습니다. 이중 1990년 이후 동남아 지역에서 입국한 것은 100여명, 러시아와 인국 지역에서의 입국도 100여명 수준이나 됩니다. 또한 중국 지역에서 입국한 것은 1990년 이후 전체의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탈북자는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탈북자에 대한 접근은 하나의 문제로서 접근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탈북자의 발생과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특수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일반적 현상입니다. 즉 새로운 사회에 이주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민들이 이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적응 수준도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탈북자의 적응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국내 입국 초기로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안정적 정착기반을 확보할 경우 한국사회에의 적응은 성공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들의 초기 적응이 실패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입국 직후 생활하게 되는 대성공사와 하나원에서의 내실 있는 교육과 생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탈북자는 교육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적응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거나, 자유로운 새로운 생활을 단순히 경험하는데 소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탈북자의 적응 정책의 우선순위는 자발적 적응의지를 제고시키는 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소위 '거지근성'을 높여주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 강연과 저술활동 위주의 소득활동, 시혜적 지원 등은 이들의 적응의지를 약화시키는 기능을 할 뿐입니다.

넷째, 탈북자 지원과 보호는 결국 시민사회가 담당해야 할 영역입니다. 따라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탈북자 문제는 정부주도 민간보조형의 모델이 적합성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상호 역량과 역할 범위 등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함께 할 필요가 있

습니다.

김영수: 김명기 교수님의 글 중에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적 보호를 위해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이와는 별도로 특별법과 난민보호법을 제정하여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이들이 외국에 체재하여 남한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의를 바꿔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남한에 들어오기 전에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입법조치하는 경우 실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내에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를 유치하는데 관계당국과 교섭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유치하는데 필요한 요건과 문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접근하면서 정부부서를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외교통상부, 통일부, 적십자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탈북자를 난민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난민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과 북한도 부인할 수 없는 사례를 발견하여 축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우택 교수님의 논문 중에 경제적 적응이 심리적·사회적 적응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 남한사람들을 대상으로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가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의 ‘영웅’ 대우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경험들이 탈북

자들로 하여금 남한 정부에 대해 경제적 측면의 전적인 의존 기대감을 가지도록 만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탈북자의 대부분의 영웅의식을 갖는지? 갖는다면 전체의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한에서의 강연자로서의 경험, TV출연 등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과연 영웅의식으로 인식하고 점차 강화해 나가는지 의문이 듭니다.

탈북자들의 양가감정과 관련하여 남한사람들이 탈북자에 대해 갖는 양가감정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탈북자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애정을 가지면서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애증이 교차하는 유사 양가감정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탈북자의 적용양상을 통일후 남북한주민의 적용으로 일원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고등학생·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대부분 탈북자를 직접 만단 경험도 없이 피상적으로 탈북자를 인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탈북자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견해가 대다수로 나타나 호기심은 무척 높은 평이나, 꼭 만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2) 가족이나 친인척을 두고 탈북한 행동에 대해서는 학생들 반수 이상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탈북행동의 정당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3) 탈북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탈북자의 입국 사실 및 신상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 대부

분이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자를 체제경쟁 차원에서 홍보 및 선전수단으로 다루는데 거부감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 경제문제, 심리적 적응문제, 새로운 대인관계 수립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 특히 체제차이에서 오는 전반적인 이질감 때문에 언어가 같다고 해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적응상의 어려움과는 달리 탈북자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태도는 비교적 우호적이며 동정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예컨대, 탈북자를 앞으로 전원 수용해야 하고, 이웃으로 이사를 경우에 따뜻하게 맞아주어야 하며, 자신의 기업에 고용하는데도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질서위반과 같은 사회적응과정에서 빛는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그러나 북한출신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문제, 탈북자의 자격 및 경력 인정문제 등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즉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며 동정적인 분위기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입학제도나 장학제도의 특례 및 특혜여부를 놓고는 고등학생, 대학생의 이해관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 결혼과 친구 사귀는 것 등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상과는 달리 매우 유연한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젊은 학생들의 의식속에 북한인에 대한 본질적인 거부감이나 적대감이 존재하는 것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8) 고등학생에 비해 대학생의 반응이 보다 현실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며, 탈북자에 대한 관용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 학생들 대부분이 탈북자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특히 탈북자와 관련된 정책을 거의 알지 못한 채, 이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그만큼 탈북자들이 남한인과 멀리 떨어진 채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서재진: 저는 통일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일은 긴 시간을 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 다른 곳으로 탈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의 성격을 감안할 때 북한은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미 남북한 통합의 시발점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내 탈북자 문제는 남북사회통합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외탈북자 문제는 인권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탈북자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관련당사국들이 미사일문제와 핵문제에 매달려 있어 핵심적인 의제로 떠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핵심의제로 부각될 수 있기 위해서는 미사일과 핵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탈북자 문제가 중요 의제로 부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위론적 차원에서 이들 재외탈북자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수월한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으로 연변지역 등에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NGO에 대한 지원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정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ARS 등을 통해 이들이 국내에서 모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 탈북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지만 이들을 남한으로 데려오는 것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원하여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적응은 통일에 대비하여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작년 겨울 연변에 가서 만난 북한기관원은 귀순한 김형덕이 재차 남한에서 탈출한 것이 탈북자들에 대한 남한의 대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따라서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잘 산다는 메시지가 중국과 북한쪽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탈북자의 적응문제와 관련하여 전 교수님은 주로 심리적 적응 차원에서 접근하고 계시는데 적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요인에 있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직업 등 경제적 문제에서 갈등이 발생하므로 탈북자들의 적응에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적응 초기에 남한 사회와 직접 부딪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하나원은 오히려 남한사회의 적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림: 아까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적응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점은 크게 문제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체

사상은 현실과 상반되는 이념이라는 점에서 금방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에서 물질만능, 부익부빈익빈 등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교육하여 이 체제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 기회가 없었고 가족에 대한 생각, 남한에서의 소외감으로 정신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북자들에게는 정신적 영역에서 바로 서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인물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 국가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질과 경쟁사회의 본질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독일이 통일된 이후 간부들이 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통일되면 모두 거지가 될 것이라고 간부들에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인이 1달에 4번 오전에 교회에 나가면 50만원을 받았는데, 서너개 교회에 적을 두고 돈을 타서 쓰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지적이 나왔던 대로 이러한 방식은 북한사람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훈: 총괄적으로 말해 우리의 탈북주민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90년대 중반이후 짧은 기간에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정책당국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해외체류 탈북주민을 포함한 탈북주민 전반의 실태에 관한 일반인과 민간단체의 이해도 높아졌습니다. 향후의 과제는 이러한 일반론적 수준의 발전을 각론의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일인데, 그런 측면에서 해외 체류 탈북주민 보호와 국내 체류 탈북주민 지원이라는 양분야의 핵심 과제를 다룬 이번 워크숍은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생

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해외 체류 탈북주민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곧, 해외 체류 탈북주민의 규모를 가능한 최소치로 발표해왔고, 이들의 국내수용에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탈북주민의 수용을 억제하고 선별적으로 수용하였으며 대북정보 수집에 치중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제3국 정부와 북한에 대한 관계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자세로부터 다소 변화를 시도하여 국제회의 석상에서 탈북주민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시에, 제3국내에서 탈북주민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변화임에 틀림없으나, 여전히 문제제기 또는 조용한 관망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3국내 탈북주민 보호나 이들의 수용 면에서는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김명기 교수님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제3국내 탈북주민을 보호하는 법률적 근거도 미약한 상황입니다.

현재 해외 체류 탈북주민에 대해 보호와 지원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구호 차원의 지원, 대북 선교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보호와 지원은 중국 공안당국의 태도에 곧 바로 영향을 받는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일부는 국제여론 환기에 주력하여 국제 사회에 대해 그리고 중국 정부에 대해 강도높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동조하여 최근 들어 탈북주민 보호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제 민간단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제 민간단체 가운데 제3국내에서 탈북주민 구호 사업을 실제로 벌이고 있는 단체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김명기 교수님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해외 체류 탈북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방법을 거의 망라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방법은 대부분 탈북주민의 인권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너무 이것을 부각시킬 경우 역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권문제에 취약한 제3국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문제의 해결보다는 은폐 또는 의견상 축소에 치중할 경우 탈북주민에 대한 단속 강화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제3국에 대한 전방위 압력보다는 김명기 교수님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시피 정부 차원에서는 가장 주효한 방법, 곧 유엔인권위원회나 고등난민판무관실 또는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식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컨대 이제까지 가장 많이 제시되어온 유엔 고등난민판무관실을 우선 활용하는 방식이 어떨까 여겨집니다. 김명기 교수님이 제시한 제3국내 탈북주민 보호·지원 대안, 곧 난민 지위부여, 수용소 설치, 현지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청탁지원에관한법률」의 제3국내 탈북주민 보호 규정 삽입은 모두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단 정부 차원에서 지금 주력할 일은 이에 필요한 여건의 조성으로서 제3국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국제 사회와 기구의 관심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는 국제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는 일과 실제로 제3국에서 공동으로 탈북주민을 보호·지원하는 사업을 벌여나가는 일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 내 민간단체, 예를 들어 중국인권위원회 같은 단체와 연계활동을 벌이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적 문제와 연계된 사안인

관계로 민간단체와 정부의 협력체제 구축도 중요하므로 상호 정보교류 채널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비정부 차원의 해외 체류 탈북주민 보호·지원 활동과 관련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은 활동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제3국 정부 차원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로서, 위에서 지적한 우리 정부의 여건 조성 노력 여하에 그 결과가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물밑 타결이 없다면 우리 민간단체의 탈북주민 보호·지원 활동은 계속 불안정한 양태를 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98년 11월 ① 직원훈련 활성화 차원에서 훈련기간 동안 가계보조수당 같은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② 정착지원금을 종전의 월 최저임금의 100배 상당액 이내에서 250배 상당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① 거주지 보호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② 취업알선에 더해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하고, ③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④ 영농정착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⑤ 국민연금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⑥ 공공시설내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 허가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위의 정책수정 방향은 주로 탈북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금 액수를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수정 방향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전우택 박사님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단순한 지원금 상향조정은 탈북주민의 의존성과 기대감만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탈북주민 유입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과 대량 탈북상황 발생가능성도 고려한다면, 재정 부담 가중을 초래

할 수 있는 정착지원금 상향조정은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 시범적인 탈북주민 정착지원 시설로서 하나원도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 인력의 경험 부족, 전문 인력 부족, 지원봉사 자원 확보 미흡, 일부 프로그램의 비현실성 등 하나원 운영 면에서도 몇 가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는 달리 준 정부 성격의 지원기구로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민간단체로는 인권단체,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같은 곳의 활동이 있습니다. 북한이탈 주민후원회의 경우 아직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와의 연계 체계 구축도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순수 민간단체의 활동은 상당히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역으로 표준 프로그램 같은 것을 도출할 정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선교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전우택 박사님도 우려한 부정적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착지원금 인상보다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원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운영계획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능을 정상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자원 봉사 자원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능력 있는 비 정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원 배출후의 중장기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일종의 표준 프로그램으로 확정하여 모든 민간단체 관계자가 일종의 교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우택 박사님께서 지적한 비적응 가능성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의 운영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부차원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중장기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관련 민간단체간 협의체 구성과 공동작업 전개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부 종교단체의 경우 지원금을 선교수단으로 활용하는 자세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중무: 재외 북한이탈주민, 특히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참혹한 실상은 같은 민족으로 아픔과 분노마저 갖게 합니다. 정부와 민간 지원단체, 일반국민들 모두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방법으로 들어가면 우리 사회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김명기 교수님의 발표 논문은 그런 점에서 남한의 정부, 비정부기구들이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도적·절차적 방안과 실천적·실제적 방안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제법상 보호의무자와 국내법상 보호의무자로 구분하여 남한, 북한, 체류국, 유엔기구에 부과된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은 특기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시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의 문제이고, 이를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 행위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가 '지원주체(유엔기구, 정부, NOG등) 중심적 사고'에 있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북한 식량난 초기에는 긴급식량을 구하기 위한 단기체류자가 중심이었던 것에서 지금은 장기체류자가 증가하는 등 점차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문제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 '지원주체 중심'의 접근 방법을 전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원대상자의 조건, 상태에 입각해서 지원방안을 찾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다수가 체류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재외 북한 이탈주민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북한 체제에 불만을 품고 반대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을 순수하게 정치적 난민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수는 전체 재외 북한 이탈주민 중에서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정치적 의사와 무관하게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북한을 이탈한 유형입니다. 이들은 체류국에서 생활터전의 마련을 통한 장기체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셋째, 북한에서의 생활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갖고 필요한 식량, 자금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북한을 이탈하여 단기체류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북한으로의 귀환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외 북한이탈주민을 유형화시켜 볼 때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지원방안과 접근방법에 몇 가지 무리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먼저 재외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정치적 난민으로 규정하여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난민지위를 인정 받기가 쉽다는 이유로 전술적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 접근 방법은 재외 북한이탈주민을 북한내에서의 심각한 식량난을 피해 탈출한 경제적 난민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적 난민에 대한 지원이 아무래도 소홀해 질 수 있고, 북한 경제가 회복될수록 장기체류자의 경우 '경제적 난민'으로 주장하는 데는 무리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 북한이탈주민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인권적 차원’과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유형인 ‘정치적 난민’의 경우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의 재외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최소한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엔기구, 체류국, 남한의 법적 의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방안으로는 중국의 협조로 동북3성내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를 설치하여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조건에서는 재외 북한이탈주민 중 ‘정치적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명과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의 협조를 얼마나 받아 낼 수 있느냐는 한국 정부의 대중 외교력에 의해 규정될 것입니다.

둘째, 셋째 유형의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유형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려는 접근 방법은 실효성이 매우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 국제법상 경제적 난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체류국에 부과하기 어렵다는 점, (2) 국제사회가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체류국, 특히 중국에 대해 개입과 간섭을 통해 기존 입장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점, (3) 정부가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공식적 대응을 꺼리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들 유형에 대한 지원목표는 ‘북한으로의 무사귀환’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유형의 재외 북한이탈주민은 식량난이라는 비상상황에서 국경을 넘은 것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이 점차 호전되는 것에 따라 귀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방안은 이들이 북한 내에서 생활

터전을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귀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물밑 교섭을 통해 일정 기간까지 단속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의 원칙을 주지하고자 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인도주의적 행위이며, 따라서 중립성·형평성·독립성에 충실해야 하며 인도적 지원활동에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순수한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활동이 확고하게 정립되어야 북한·중국의 부정적 태도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신화: 현재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난민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공식난민’의 기준은 2차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난민사태 수습을 목적으로 유엔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1951년의 유엔난민협약서입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유럽 난민문제는 수그러져 간 반면 제3세계에서 발생한 각종 정치탄압과 전쟁이 많은 난민을 발생시키기 시작함에 따라 난민협약서를 확대 개정하여 1967년 난민의정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국제난민지위의 기준에 따르면, 전쟁과 박해 등 정치적 이유로 인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만이 합법적 난민으로 보호나 원조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약 1,400만명 정도가 이 범주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 난민 이외에도 국내유민(IDP, Internally Displaced Persons)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3,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IDP는 유엔이 인정한 난민들과 똑같은 이유로 고향을 탈출하였더라도 국경선을 넘지 못한 채 자국 내에서 유리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이 인정하는 난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난과 환경파괴, 정부의 자연재해 방지 및 대처능력 결여가 맞물려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빈궁에 처한 사람들은 ‘떠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상황에 처하여 자신의 고향을 떠

나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난민’ 혹은 ‘경제난민’들의 문제도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현행 국제 난민법이 명시하고 있는 난민의 범주가 실제 난민사태에 대처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더욱 심각해진 대량(정치)난민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이 국내난민, 환경난민, 경제난민과 같은 새로운 영역을 다루기에는 시간, 인력, 재정 면에서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UNHCR의 입장은 난민지위를 신청한 자, 즉 비호신청자(asylum seeker)가 발을 디디고 있는 당사국(중국)의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UNHCR이 할 수 있는 일도 그 당사국 외교부나 법무부와의 협의 혹은 설득을 통해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유하는 정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탈북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기본입장은 이들이 불법 입국자이므로 1960년 조중조약에 의거하여 강제 송환한다는 것이며, 특히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 관여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사항과 관련하여 평소 재외 탈북자들의 국제법적 지위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해온 사람으로서 김명기 박사의 논문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우선, 김 박사의 논문 중 명시된 ‘난민인 재외북한이탈주민은 사실상 무국적자로 북한의 외교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외북한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남한과 북한을 모두 국가로 승인한 국가인 경우 이들은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의 국적을 가진 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의 의무는 남한에 있다’는 점은, 향후 재외 탈북주민들의 법적 지위정립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동시에, 중국정부나 UNHCR과의 탈북자문제 협의에 있어 우리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 해석이므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김 박사님께서 재외북한이탈주민은 난민이란 전제하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신 반면, 결론부분에서는 이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들을 난민이라고 단정하고 논지를 펴가는 것에는 좀더 신중한 이론적,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재외북한이탈주민은 그의 국적국인 북한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므로 북한의 외교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이탈주민의 의사(주장)가 이들을 불법체류자 또는 북한에서 죄를 저지르고 도망 나온 범법자이기 때문에 강제송환시켜야 한다는 중국이나 북한정부의 주장과 맞설 때, UNHCR이 어떻게 준영사적 보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김 박사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정부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내체류 탈북자보호에 치중되어 재외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호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이제까지 탈북자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대부분의 경우 국내정착 탈북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왔습니다. 물론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불법체류자로 규정하고 있어 공개 지원이 어려웠고 대북 포용정책의 맥락에서 북한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취지 등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동포인 탈북자들의 보호에 계속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면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대북 포용정책인가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북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그곳에 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이에 탈북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한에

UNHCHR 사무소를 설치하고 재외 탈북자보호를 위해 특별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조금 더 범민족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한데, 현재 UNHCR의 對한국 업무는 동경에 일본 및 한국 대표관을 두고 한국에는 파견 나오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93년 초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이제까지 국내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이점은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 방지를 위한 성공적이고 주도적인 외교노력을 위해서라도 한번쯤 재고되어야 할 사항이며, UNHCR 한국사무소가 설치된다면 우리정부에게 더욱 강한 국제적 압력으로 다가올 사항일 것입니다.

셋째, 유엔 주요기관이나 전문기구들의 법규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이를 재외북한이탈주민의 사례에 적용시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도 김 박사님 논문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께서 길게 나열식으로 제시한 제도적·절차적 방안부분을 조금 압축(tighten up)하고 끝에 이들 기구들의 역할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처리한다면, 방안에 대한 김 박사님의 논지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가감정 갈등’의 측면에서 탈북자의 심리상태를 진단한 전우택 박사님의 논문은 이 분야에 대해 문외한인 탓에 논평을 하지 않았지만, 전 박사님이 논문의 주제상 다루지 않으셨지만 제 소견에 국내탈북자 문제 대처 방안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 두가지 점만 간략하게 지적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최근 UNHCR이 공식적으로 ‘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 중국 내 탈북자 중에 소수의 난민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유엔의 진일보한 자세변화가 우리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여건, 혹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내의 민간단체 NGO들의 수년간에 걸친 노력이 직간접적으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변화에 있어 NGO의 역할이 의미 깊다고 봅니다.

둘째, 우리 외교통상부 장관이 탈북난민을 전원 수용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발언은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가 현재 수백 명 수준이고, 가까운 시일 안에 입국 탈북자들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난민을 수용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적어도 4가지 사항, 즉 첫째, 규모(magnitude: 얼마나 많은 난민이 유입되었고 우리정부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가), 둘째, 긴급성(emergency: 얼마나 짧은 시간동안 급작스럽게 난민이 유입되었고 우리정부의 대책-contingency plan-은 무엇인가), 셋째, 체류기간(duration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넷째, 성격(characteristics: 난민들은 단순히 민간인들-innocent victims-로만 구성되어있는가 아니면 위장귀순자와 같은 성격의 스파이 혹은 난민 전사-refugee warrior-를 포함하는가)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윤인진: 전 교수님은 탈북자들이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정치·사상적 측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개인차가 크며, 심리적 적응에서는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우택 교수님의 논문에서는 심리적 문제의 구조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교수님의 논문은 새로운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하였다기보다는 기존의 연구, 특히 전 교수님 자신의 심리적응 연구에 많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전교수님의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것은 정신의학적 용어로서 “양가 감정에 의한 갈등”이라는 개념

을 도입하여 이것을 통해 탈북자들의 심리적응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갈등해소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입니다. 양가감정이란 “두개의 공존할 수 없어 보이는 감정, 생각, 인식, 충동이 동시에 한 사람의 마음속에 공존하는 심리적 갈등 상태”를 지칭합니다.

전 교수님은 탈북자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양가감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특별한 사람이나 보통 사람이나, 둘째는 남한 정부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나 독립이나, 셋째는 돈을 무서워 할 것인가 우습게 여길 것인가, 넷째는 두고 온 가족들을 잊어버려야 하나 기억하여야 하나, 다섯째는 탈북자들은 남한 사람인가 북한사람인가입니다.

전 교수님에 의해 제시된 양가감정은 탈북자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정도 기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개념은 탈북자들이 사회적응과정에서 겪게되는 문제들의 근본원인을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교수님은 탈북자들이 처한 현 실태와 탈북자들의 실제 의식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양가감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탈북자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을 본인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 교수님께서 제시하는 양가감정이 탈북자 문제를 설명하는데 갖게 되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대안적인 접근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 교수님은 탈북자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북한을 떠난 “보통 사람”인데 남한에 와서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게 됨에 따라 자아정체성 형성에 혼란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 중에, 특히 최근에 입국하는 탈북자들 중에 개인적인 이유로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전체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를 개인적인 이유로만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또한 비록 개인적인 이유

가 탈북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어도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 남한에 대한 정보 등이 사전에 있어야 탈북이라는 위험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연구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정체성 혼란을 양가감정 이외에도 전체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북한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거나 스스로 선택을 해본 적이 없다가 남한에 와서는 모든 일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체성의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전 교수님은 탈북자들이 북한식의 영웅의식에서 남한 정부에게 의존하려는 의식을 갖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설명도 실제 탈북자들의 심리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면담한 탈북자들은 신앙생활을 전제로 교회에서 지급하는 생활비를 받는 것을 수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몇 푼 안 되는 강연료나 생활비 등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일해서 버는 것을 강렬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탈북자들이 지나친 기대심리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현실에 대해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라기보다는 취업과 적절한 수준의 임금입니다. 비록 사소한 문제지적이지만 전 교수님은 탈북자들이 '하나원'이라는 단기 보호정착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지만 현재 하나원에 체류하는 원생들과의 대화에 따르면 하나원내의 생활보다는 퇴소후의 생활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 역시 전 교수님이 탈북자들의 현재 생활 실태에 대해서 최신 자료와 정보를 갖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셋째, 전 교수님은 탈북자들이 돈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돈의 노예가 되기 싫다는 양가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에 대한 이중적인 태

도는 비단 탈북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남한 주민, 나아가서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심리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교수님은 계속해서 탈북자들이 강연료나 교회에서 지급하는 생계보조비와 같은 쉬운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하였는데, 강연 기회가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지급하는 돈이 신앙생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돈이 아닙니다. 본인이 면담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교회, 이북5도회, 또는 기타 민간단체에서 지급하는 격려금, 지원금 등에 대해서 “자신들이 무슨 거지냐?”하는 식의 강한 반발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벌어서 살고 싶다는 자립의지가 강하지 의존해서 살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연구¹⁾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자본주의적 남한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노력만큼 돈을 벌고 싶다는 의식을 갖지만 그러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남한체제에 대해서 반감과 부정적 의식이 형성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탈북자들이 돈에 대해서 양가감정을 갖는 것은 이들의 기본적인 인성이 그렇게 되었다기보다는 마치 이솝우화의 신 포도의 비유처럼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게 될 때 생기는 반발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탈북자의 사회적응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의식구조나 심리상태가 아닌 기회구조의 문제입니다.

넷째, 전 교수님은 탈북자들의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이 오히려 이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즉 “지금은 자신이 어쩔 수 없어 여기에 와 있고,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그런 가족들의 고통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통일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1) 윤인진, 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33집:511-549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여기서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의지가 있다고 이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지만 강하고 기회가 없을 경우에는 좌절감이 더욱 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기회구조의 문제가 탈북자의 사회적응 문제의 가장 큰 변수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전 교수님은 양가 감정적 갈등이 탈북자들의 건강한 심리적 적응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교수님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심리적인 문제이니 만큼 정책제안도 대체로 탈북자들과 남한주민들의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앞에서 계속해서 언급한 기회구조의 변화는 전혀 거론되고 있지 못합니다. 전 교수님은 탈북자들에게 정착 지원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인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이유는 양가감정의 문제에서가 아니라 취업정보, 최저생계 보장 등과 같은 기회구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본 논문이 발표되는 워크숍의 구성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적응인데, 이러한 문제는 다루지 않고 심리적인 적응에 관련한 주제만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은 빠지고 주변적인 것만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물론 심리적인 적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적응과 같은 보다 중요한 문제들이 함께 다루어졌으면 훨씬 균형 있고 현실적인 워크숍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회의일정

< 세부일정 >

- ◆ 13:00~13:30 등록
- ◆ 13:30~13:40 개회식
 - 개회사: 광태환(통일연구원 원장)

- ◆ 13:40~17:00 주제 발표 및 토론
 - 사 회: 채성호(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 발 표: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및 실효적 지원방안
 - 김명기(명지대학교 교수)
 -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심리적 갈등구조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
 - 전우택(연세대 의과대학)
 - 토 론: 김영수(서강대학교 교수)
김중훈(외교통상부 과장)
서재진(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여상(영남대 연구원)
윤인진(고려대 교수)
이신화(고려대 교수)
이종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실장)
이종훈(국회 사무처 박사)
김영림(전 북한 금수산의사당 경리부)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김영춘·신상진의 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안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김영운·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정영태·오승렬의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배정호·신상진·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육태환·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윤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의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합의	김병로·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	이교덕	저	4,500원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균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흠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성훈	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헌경	저	5,000원
99-01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제성호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i>			
		옥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i>			
		김병로·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i>			
		최의철·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9</i>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9.90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99-0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5,500원
99-0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7,000원
99-0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6,500원
99-04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향	5,500원
99-05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5,0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7 (1998)	8,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와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을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1998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